

2017
여름

생협 평론

27

길잡이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 박종현(편집위원장)	6
-----	----------------------------------	---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
—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28
—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41
—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58
—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71
—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84
—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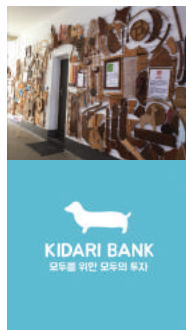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95
----------------------	----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이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서 — 변형석(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116
	통계로 본 협동조합 1만 시대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126

기획특집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②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제1, 제2원칙 해설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6
르포	벨기에 사회적경제 탐방	
	환경과 빈곤을 함께 고민하는 벨기에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La Bourrache) — 정원각(라이프인 이사)	151
아이쿱생협 만평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박해성(만화가)	172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⑦	
	가난한 대학생을 위한 ‘모두의 은행’ — 김은남(시사IN 기자)	17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⑦	
	전환기 시대, 창업과 배움으로 — 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187
서평	“꽃 하나 쌀 한 톨, 꽃 한 다발 밥 한 그릇” : 장영란·김광화, 『밥꽃 마중』 — 엄지영(아이쿱 시민기자)	196
협동조합 소식	정부 인식 변화, 협동조합을 성장시키다 —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200
생활 속 사회적경제	이번 여름 휴가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 신효진(편집위원회)	204
	독자의 소리	4
	정기구독 안내	23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208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24



독자의 소리

아이쿱생협의 쟁점도 다루어주기를

정문순

창원아이쿱생협 조합원

‘GMO완전표시제’는 2015년 중순부터 아이쿱생협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캠페인이다. 그해 전국 아이쿱생협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조합원을 비롯한 17만여 명의 입법청원 서명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다른 단체와 연대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런 노력이 GMO 표시 확대나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표시 기준 마련 등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고시의 일부 개정으로 나타났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찜뽕’ 수준의 개선 밖에 이루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국은 GMO 식재료와 사료 수입에서 일본과 수위를 다투는 나라다. 사료를 제외하면 부동의 세계 1위라고 짐작된다. 아이쿱생협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제품의 GMO 정보를 낱알이 표기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온통 GMO 천지인 이 나라에서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시각에 가깝다. GMO완전표시제는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소비자운동의 보편적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GMO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기 드물고 소비자들의 GMO 관련 정보나 경각심도 낮은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만 해도 소비자를 의식하여 GMO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거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주장은, 소비자들이 아이쿱생협 조합원처럼 GMO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한 아이쿱생협의 GMO 입법 캠페인이 현실성 있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중산층 중심의 운동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GMO 표시 못지않게 ‘Non-GMO’ 표시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Non-GMO 표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걸려 있는 사안은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든 논쟁거리다. 이것 하나만 논쟁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원료 가공 후 GMO 단백질·DNA가 검출되더라도 원재료를 기반으로 GMO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쿱생협의 주장이다. 아이쿱생협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기준인



0.9%까지 인정하여 Non-GMO 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GMO 표기 입법을 추진한 다른 단체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전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느 것이 합당한가?

생산자 처지에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최종 제품에서 GMO 단백질이 검출된다면 억울한 심정이 들 것이다.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물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애써 Non-GMO 생산품을 만들고 싶은 의욕이 꺾일 수 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품에 GMO가 잔류하는데도 아이쿱생협 요구의 0.9%이든 현행 정부 기준 3%이든 물품에 GMO 없음이라는 표기가 허용된다면 섣뚱 찬성하기 힘들 것이다.

아이쿱생협이 비록 정부에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Non-GMO 표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한 데서 보이는 ‘융통성 있는’ 모습은, 그동안 아이쿱생협이 GMO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으면 GMO 표시를 면제한 규정 등에 반발했던 것에서 보인 원칙주의적 접근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주기도 한다. GMO 원재료 함량이 5순위에 들지 않을 경우 표시를 면제한 이전 규정에 반발한 아이쿱생협이, Non-GMO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표시를 허용하지 않은 개정 규정에 반발한다면 모순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비의도적 혼입치의 인정 등 원재료에서 GMO를 배제한 생산자의 선량한 의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이쿱생협처럼 조합원과 생산자 간의 연대가 튼튼한 조직에서는 가능할지라도 어느 일반적인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 둘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원재료에 기반하거나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소비자보다 더불어 양대 축을 이루는 생산자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는 아이쿱생협의 조직 논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Non-GMO 농업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반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비의도적 혼입치 0.9% 인정에 대해 조합원들도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GMO완전 표시제 캠페인을 벌인 지난 2년간 아이쿱생협 내부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제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GMO완전표시제 캠페인은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에게서 나온 요구라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하달’ 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주체라기보다 동원 대상에 기울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생협평론』이 협동조합 일반의 현안이나 쟁점 못지않게 아이쿱생협이 벌이는 정책도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길잡이

박종현

편집위원장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촛불 혁명과 장미 대선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세워졌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의 새로운 리더십을 지켜보며,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구호가 공염불이 아님을 실감한다. 대통령의 연설들을 일부러 찾아 듣는 국민들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뜻이 있는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도 적지 않은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있었던 ‘경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천명이 특히 눈에 띈다.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를 통해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이자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완성임을 역설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직장가 가정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경제 민주주의의 과제는 기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묵묵히 실천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안전한 먹거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사회서비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등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들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기초한 이러한 활동들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한층 슬기롭고 체계적으로 더해진다면 경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사회적경제의 역량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 이 점에 주목해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을 특집 주제로 잡아보았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왜 중요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회적경제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 총론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이병학 전 집행위원장이 맡아주었다. 이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와 민관 파트너십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설계하고 여러 부처별로 시행될 관련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조율토록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의 양대 축인 사회적기업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의 정책 관련 분석 및 제안은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들려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으로 바꾸고,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됨과 동시에 이윤 배분 및 자산 처분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됨으로써 윤리적 소비자와 사회적 투자자로부터의 자원 유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장종익 교수는 협동조합들의 경우, 설립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필요한 자원, 성공 요인, 정책적 요구사항 등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의식 위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협동조합 대상 지원체계도 이러한 유형에 근거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 및 영리부문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며 사회적경제의 초석을 다져온 헌신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꼭지를 통해 청년·여성·노인 등 현장의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심화·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

태의 정책적 지원과 동료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금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연대해 노동과 주거, 생활에 이르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경험들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김만희 일자리사업 본부장은 장년층에게 사회적경제가 어떤 가능성을 주며 장년층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강화시켜줄 수 있는지를 밀도 있게 검토하고, 장년층들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도 제시한다. 오김현주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짚어보고,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역설한다.

이 다섯 편의 글에 더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좌담>도 마련해보았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9대 대선의 결과가 우리 사회와 사회적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조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기반은 무엇인지, 민관 협치의 구체적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등을 놓고 풍성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중한 토론의 장에 참여해준 김대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서형수 국회의원,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공동의장,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SO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호의 <이슈>에는 두 편의 글이 실렸다. 한겨레의 김현대 선임기자는 정부 및 국책 연구원에 의해 생산·집필된 객관적인 통계 조사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협동조합 1만 시대의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향후 대안도 제시해주었다. 트래블러스맵의 변형석 대표이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을 맞아,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악전고투를 거듭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협력 관계를 ‘당사자 주도성’이라는 원칙 위에 발전시키자고 제안한다. 변 대표이사의 이 글은 <특집> 중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쪽지에 넣고 싶을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일독을 특히 권한다.

우리는 지난 호부터 “협동조합 원칙 다시보기” 코너를 <기획 특집>으로 신설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과제를 띠고 전개되어왔는지, 7대 원칙의 기본구조와 상호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각 원칙들에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공부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의 제1원칙과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의 제2원칙을 다루었다. 이 쪽지를 통해 독자들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조합원”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같은 실천의식도 얻게 될 것이다. <르포>에서는 환경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벨기에의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La Bourrasche를 소개하고 있다.

<기획 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대학생들이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이타적 금융”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해 가난의 문제에 맞서고 있는 키다리은행을 다루었다. 이 쪽지 또한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보여주셔도 좋겠다. 또 다른 <기획 연재>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은퇴 후 협동조합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니어 창업을 다루었다. <서평>에서는 장영란, 김광화의 책 『밥꽃 마중』을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만평>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협동조합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해외 사례들을 전하는 <협동조합 소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생활 속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새 쪽지를 만들었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려는 의도로써,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함께 알찬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다.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특
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안전한 먹거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사회서비스, 행복한 지역만들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제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기초한 이러한 활동들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사회적경제의 공익적 기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출범에 주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사회적경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이를 돕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을 다루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동안 공공부문이나 영리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이 국가와 어떠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사회적경제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적·입법적·제도적 과제들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새협 평론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서형수, 송경용, 최혁진

이병 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사회적경제의 자율적 발전과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들어가며

제19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으로써 참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청와대에 신설된 일자리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배치되었다. 불과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고위직 공무원에 사회적경제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여러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합하면 15,0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 정도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 정책의 하위 전달체계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다. 이념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하다.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일자리수석실에 배치한 것은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를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에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회적경제를 기업의 틀로만 가둘 가능성이 있어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모색을 토대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직후인 3월 14일 인천의 한 피자 가게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사람은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맞서 가맹점주들이 만든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의 이사장이었다. 피자연합은 갑을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인 프랜차이즈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었다. 설립 이후 수개월 만에 가맹점이 7개가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0개까지 확장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는 피자연합에 치즈를 공급하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치즈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피자연합에서 운영하는 피자 가게 근처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을 내고, 전국 매장 중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이는 피자연합에는 건지기 힘든 타격이었고, 결국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가맹점주가 남긴 유언은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는 말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가 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지,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더 줘서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 정책을 통해 일관되게 대기업 위주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WTID,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았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 정도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2012년 44.9%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 기간(1995~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상승폭은 15.7%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아동의 삶 만족도, 자살률, 노인 빈곤율, 가계부채 증가율 등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지수, 부패지수,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초, 야만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태동했다. 당시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주당 70~80시간은 기본이고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17세에 불과했다. 협동조합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은 이러한 환경에서 결성되었다. 당시 로치데일의 운영 원칙은 ▲1인 1표제 ▲정치·종교의 중립 ▲이자의 제한 ▲구매액에 따른 배당 ▲시가市價 판매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범죄와 경쟁이 없는 산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공업의 발전, 도덕과 능력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쇠퇴하던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당시 유럽은 빈곤과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벨기에 리에주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사

회적경제센터 소장인 자크 드푸르니(Jacques Defourny)는 이런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를 첫째, 이윤 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봉사, 둘째, 운영의 자율성,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넷째, 소득의 분배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우위라는 네 가지로 정리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과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등장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제도화된 자활사업이 사회적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 생산공동체 운동이었다. 생산공동체 운동은 건강한 자치와 협동이라는 공동체의 운영과 노동문화를 통한 빈민들의 의식 변화, 생활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시 생산공동체 운동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목표를 경제적 성과보다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적인 인간 형성과 관계 형성, 의식 변화라는 주민 교육에 두었다. 그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 너머에 건강한 시민의식과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와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에 비전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이외에도 공동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는 많다. 청년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의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시장적 접근이 아닌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처한 극심한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피자연합과 같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돌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균형적·포용적 성장에 있어 동반자인 만큼, 경제적 약자에게 애초부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국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운영의 자율성’이다. 특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중요하다. 『21세기의 협동조합』이라는 보고서를 쓴 협동조합 전문가 레이들로 A. F. Laidlaw 박사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힘으로는 올바르게 운영할 수 없는 기업 형태의 하나가 협동조합”이라고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종류의 사업은 관료주의의 무거운 압력 하에서는 활력을 상실하고 만다. 협동조합의 신비스러움은 수은水銀과 같은 것이어서 관료의 손이 닿으면 사라지고 만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제도화와 발전 과정을 거치며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자활기업의 경우 설립을 지원하는 지역 자활센터의 성과 평가에 자활기업 설립 실적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활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정부에 의한 인증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연계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의하고 범

주화한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특정 조직만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든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도 칸막이가 만들어져 연대와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원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제도화는 관리체계의 필요로 이어지면서 중앙과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원 조직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 조직이 행정에 의해 전달체계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역량들이 지원 조직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는 인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현장 주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레이들로 박사의 말처럼 “정부와 협동조합은 서로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즉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협동조합은 조합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만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금융의 조성 및 운영 등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설계하고,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둘째,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가 결국 제정되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싸고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 또한 사회적금융,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현장의 통합과 균형 발전, 자율적 결사와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향후 개별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수준에서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만든 바 있다.

셋째,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① 사회적금융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기 정책자금의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상의 한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금융 및 기금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무

엇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 금융 및 기금 구성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제사업은 자립 기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해당 조직 외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도 협력·협업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종 조직 간에도 연합 조직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세제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한정되어 민법 상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므로 지정기부금 범위를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도 당기순이익과세를 인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이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유용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구매와 공유재산 등의 이용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경영과 소유 및 노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의 형성 및 노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동

체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①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공동체성 확보

—생애주기별 공동체 돌봄의 실현을 위한 학교 밖 방과 후 교실 활성화

—장�인과 어르신들의 돌봄 주치의사업을 통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온 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 협동조합의 활성화

②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체계의 확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촉진

—시민주도형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목표 수립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③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 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④ 지불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시행

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지역사회, 마을 교육의 실현

—학교협동조합 확대 : 매점 운영 및 교복·교과서 공동구매 등

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

- 불안정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하는 현실 개선을 위한 사업고
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노동자 인수를 통
한 고용 유지 지원

⑦ 지역공동체성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복지 사각지대への 사회서비스 공급, 지
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마지막으로,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육성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헌법 전문의 개정, 권력구조의 개편 등이 뜨거운 감자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경제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추가하면 된다. 또한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 제123조에 ‘사회적경제’를 추가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공동체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대선 기간 중 이를 3대 핵심 정책과제와 2대 특별제안으로 정리하여 각 후보 진영과 당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서를 받은바 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4월 24일에 협약식을 맺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3당이 참여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3대 핵심 정책과제	1. 대통령 직속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3. 사회적경제 법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실현
2대 특별제안	1.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 개정 2.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정책제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

대통령 직속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찬성	·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음 · 19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와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공약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찬성	· 문재인 후보는 캠프의 '일자리위원회' 출범식(2017. 3. 13)에서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 공표함
사회적경제 법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실현	찬성	·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전용 융자제도 운용 · 국민연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조성 ·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 허용 ·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공동사업, 기금 조성, 공제사업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법인세, 지방세 등 조세 감면, 재정 지원 · 생협 주무부처 변경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적용 ·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경쟁 기준으로 적용 ·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입 비중 5%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등 신규 사회공공서비스에 사회적경제 조직 우선 참여 제도화

·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 · 지역 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		·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충 · 실험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 · 장애인 주치의 사업 단계적 확대, 15세 이하 청소년병원비 국가 책임 · 돌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확대 ·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공급. ·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 사회적경제 특구 5년간 50개 지정 추진 · 사회적경제 기반의 귀농 귀촌 지원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 개정 · 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가치로서 자유 및 창의와 함께 상생을 기본 가치로 삼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개정 · 농어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육성과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한 헌법 제123조 제5항을 확장하여 1987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자조조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기타	· 헌법 개정은 광범위한 논의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 대기업, 재벌에 편중된 경제, 산업, 기업정책 편향을 극복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불공정거래 및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정과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의 시행	찬성	

나가며

사회적경제의 자율적 발전과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가칭)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관 공동 TF’를 즉시 구성해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인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정부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의 길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발전 방향을 능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관 협치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기대한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비·기부·투자 등 일반 시민과 기업, 다양한 조직들의 연계, 지원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인격의 신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투자와 윤리적 소비자의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정부 지원 규모를 줄여가면서 자생적이고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1. 서론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 기업이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현재 1,741개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과 고용노동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2017년 4월 현재 971개의 기업이 지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2007년 465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2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의 비중도 2007년 2.7배에서 2015년 14.6배로 증가하여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도 90%를 넘어 일반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3년 생존율 역시 75%로 매우 높다.¹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이 개수 측면에서 양적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와 함께 최근 5년 사이에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의 확장 속도가 둔화된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일부 논자는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출현으로 사회적 관심이 협동조합에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해석도 있다. 나아가 사회적기업 개수의 증가보다는 성장기 사회적기업 규모의 확대와 경쟁력 향상 등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시된다.

인증 사회적기업 수 증가율 둔화 이외에 우려스러운 점은 소셜벤처, 공유경제 등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들이 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들 기업은 정부 지

1 고용노동부(2017).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사회적기업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원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자신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크고 질적 성장과 더불어 양적 성장 역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하면 최근 국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이 존재하며 이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법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에 의해 정의되며 인증제도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와 지원정책이 양적, 질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인증된 기업의 숫자에 의해 규정되는데 현행 인증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실적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나 자격 수준에 도달한 기업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단지 계획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곳만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창구를 매우 협소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을 요구하고 진입 창구를 협소하게 만든 것은 정책 당국의 명시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인데 자칫 사회적 가치

일변도로 흐를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조직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럴 경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

진입 창구의 협소함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몇 가지 보완적인 사업과 제도를 만들었다. 첫째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로서 영업활동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매출액이 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이후의 지원 매력이 커져 진입 창구가 협소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인증받길 희망하게 만들고자 했다.

사회적기업을 얼마나 새롭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얼마나 견인하고 사회적기업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모두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고 있느냐이다. 일부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애초부터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이후 정부 지원제도만을 활용할 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에서는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인증 요건 중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지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고용노동부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만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인 지향을 가지고 판단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인증 취소의 절차나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초기보다 많이 다양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높고 인증 초기 지원이 많고 경직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성장기 사회적기업이 자신의 사회적 미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 활동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과 긴밀히 결합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입과 퇴출에 관련된 인증제도의 한계점과 사회적기업의 미션 자체에 관련된 지원정책 설계의 미비가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3. 법제도 개선 방안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적경제기본법 요구는 19대 총선과 이어진 2012년 대선 기간 중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정책 공약 요구 사항이었다. 2014년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

원회 구성과 함께 논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고, 201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선진국의 법 제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을 선언함을 주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정책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원칙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²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여 유사 조직과의 실질적 구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정부의 공익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의 관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대표성 있게 참여하는 당사자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 이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내용 규정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담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법 전략과 다른 관련 법안의 제정이나 개정 논의 추이를 검토하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타 사회적경제 관련법들에서 구체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이 규정될 수 있다면 기본법에서는 원칙적 규정만이 포함되어도 될 것이다.

2) 사회적기업 정의와 인증제도 개선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정의는 세 가지 기원을 가지고

2 김혜원·양동수(2014),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입법 쟁점』 참조,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있다. 각각의 기원은 사회적기업 정책의 역사 속에서 각 정부의 기여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사업 정책의 유산으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의 유산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반영되어 있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지역화 전략의 유산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반영되어 있다.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현행 육성법 상의 정의와 이에 연유한 인증 유형 구분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사회 공헌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난 지역 사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의 지리적 범위가 시군구 단위의 행정지역이나 마을을 넘어서서 전국적, 세계적 차원인 경우 이런 활동을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인증 유형 내에서 포괄하기 어렵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서도 중요하고 비중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본질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법의 정의 규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명시함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배제 집단에 직결된 기업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OECD의 정의와 같이 사회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며, 기존의 관행에 비취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기업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활동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정의함으로써 취약계층 중심적 개념화와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의 규정에서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언급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하의 조문에서 예시를 들어 상술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정의 규정이 아닌 이하 조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 유형은 활동 내용을 잘 알리는 목적 이외에도 현행 인증제 하에서

인증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30% 고용이라는 요건을 핵심 요건으로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 고객 중 취약계층에게 저가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받는 취약계층 고객은 30% 이상 되어야 한다.³ 전자는 취약계층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쉬운 조건이며 후자는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와 같이 일자리제공형으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이 많고 이렇게 인증받은 기업의 실제 활동 내용과 일자리제공형이라는 인증 유형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이나 기타형은 인증 요건이 애매하여 인증 신청을 하는 이도 인증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실제로 해당 유형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경우 지역사회공헌형이나 기타형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 영역의 경우 정성적인 판단이 중요하여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영역이다. 자칫하면 문서 작업만으로 인증을 받아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기관이 진입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인증심사를 하는 쪽에서 해당 유형에 대해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정량적인 접근이 어려운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사회문제 해결형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증소위원회 중심의 인증 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인증 전문가 또는 전문 조직을 육성하여 인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서비스 품질기업 인증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인증 위탁업무를 받은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평가, 고객 및 압행 평가 등을 거쳐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적으로 인증평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⁴ 인증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3 현행 시행령에서는 50%라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경과규정으로 실제로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4 사회적기업과(2015).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고용노동부.

대표적인 인증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성적인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경우 비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 더불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 요건에서 강화할 것은 취약계층 고용률 30% 기준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포괄되는 범위이다. 현행 취약계층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저부가가치 업종의 경우 보통의 기업들이라도 쉽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인증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자리제공형 이외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에 상응하여 취약계층 고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사회적기업 법인격의 신설과 인증제도의 개혁⁵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함과 함께 발전해왔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적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비영리법인에 의한 비즈니스는 터부시되거나 억압되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서는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상법상 회사 형태는 고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이윤을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인증제도의 속성상 인증을 받은 시점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증을 계속

5 이 소절의 주된 내용은 김혜원(2011).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의 구상』, 황승화 외.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고용노동부에 의존하고 있다.

유지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인증을 반납한 사례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장기적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행 인증제도보다 더 강한 이윤 배분의 제한을 요청한다.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 보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로는 해당 기업이 정관 변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진정성을 가진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이윤 배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정관 변경으로 이윤 배분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으로도 바꿀 수 없는 법적 형태를 애초부터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과 사회적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자발적으로 이러한 법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이윤 배분 제약을 가지면서 동시에 상법상 회사처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 형태를 법적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CIC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단초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내에 가칭 ‘사회적목적회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법인격은 상법상 회사만큼 설립을 자유롭게 하되 해당 법인은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으며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 조직에 증여해야 하는 규제를 부여받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은 등록을 통해 설립하되 등록 시 사회적 목적성을 공인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겉모양만 사회적기업

인 곳과 진실한 사회적기업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을 강화하거나 인증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비화되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법인격이 신설될 경우 진정성을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이 이윤배분 제약과 자산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회적 투자자들과 윤리적 소비자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을 채택하는 일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비해 겉모양만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는 정부 지원만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윤배분 제약과 자산 제약이 있는 새로운 법인격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법인격의 신설은 기업가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격을 신설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적목적회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서도 반드시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이유는 없다. 다만 법인격이 신설될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형태의 기업에 대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인증 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사례에서 보듯이 신설 법인격을 통한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할 경우 폭발적으로 조직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신설 사회적목적회사 법인격은 그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폐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같은 휴면 조직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기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1차적으로 검증된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 폐업률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 초기에 영업실적이 없는 휴면 기업도 늘어나고 영업실적 부진으로 폐업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과 폐업의 역

동적인 활동은 사회적기업 전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목적법인과 같은 사회적기업에 맞는 법인격이 신설될 경우 현행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 명칭을 인증된 기업만이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면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윤배분 제약과 자산처분 제약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목적 추구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회적목적회사가 대거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목적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는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인증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정부 재원과 정부 사업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혁신적 경영 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 기업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오랜 기간 협동과 연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비, 기부, 투자 등 일반 시민과 기업, 다양한 조직들의 연계, 지

원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공통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 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할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시급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편중되게 또는 협소하게 이해토록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제시하고 사회적 목적 추구의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취할 법인격은 마련되었으나 사회적기업가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인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처럼 쉽게 설립하면서 이윤 배분과 자산 처분을 법적으로 규제받는 회사 형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인격의 신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투자와 윤리적 소비자의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의 규모를 줄이고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서 평범한 이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할 때,
이러한 시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협동조합 섹터 내부에 갖추어진다면
협동조합 간에 상호성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거미줄처럼 확산되면 이를
‘사회적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협동의 의지, 노하우’와 함께
사회자본, 시민자본의 핵심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의의와 성과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제도 방식의 기업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의 선구적 추진, 조합원 간의 협동과 민주적 참여 훈련,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는 근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으로 세계적인 생산과 분업체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구조적 실업과 양극화, 파트타임 일자리의 확대, 중소기업인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노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휴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매우 차갑게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3%에 불과한 바닷물의 소금처럼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견제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20년대 일제하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운동을 총독부가 탄압하면서 좌절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 신탁운동으로 맥을 이어왔지만 개발독재체제에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제화되고 국민들에게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협동보다는 동업 기피문화가 조장되었고, 협동의 노하우는 축적되지 못했으며, 연대solidarity의 정신은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렇게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전통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설립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과 북미 지

역에서는 150년 이상 경험한 자조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축적된 협동의 노하우와 10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회association와 박애주의적 비영리재단의 연대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허용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성이 강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측면이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지닌 보통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안적 비즈니스 기업을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협동의 성과를 체험하고 협동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에 유기농식품 분야, 의료, 육아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확산되어왔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규제적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행 후 4년 만에 설립 협동조합 수가 1만 개를 넘어섰다. 협동조합 설립 시점 기준으로 추정하면, 약 12만여 명의 시민들이 1,600여억 원을 출자하여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¹ 현재까지의 설립 추이에 비추어볼 때, 시행 후 11~12년 만에 약 2만여 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기업가, 프리랜서, 조기 은퇴인, 경력단절 여성, 마을 주민 등이 다양한

1 이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사이트에 게시된 협동조합 설립 현황 엑셀파일에서 추계한 것임. 2015년부터 설립조합원 수와 출자금액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4년까지의 추계치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음.

업종과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서구 사회에서 지난 150년 동안 시민의 자발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세대 간 전수로 형성되어온 시민사회의 역량 함양 과정이 한국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자본주의적 기업 방식 이외에 협동조합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기 시작했고, 팀 기업가정신^{collective entrepreneurship}을 개발하며, 국부적^{particularized or bonding} 신뢰자본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generalized or bridging} 신뢰자본(Woolcock & Narayan, 2000)을 형성할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조적이고 자기책임적인 행동이 시민사회 조직이나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네트워크 등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표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유형별 설립 조합 수 추이*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합계**
2013. 11	1,909 (62.7)	225 (7.5)	208 (6.8)	601 (19.7)	102 (3.3)	10	3,045 (100.0)
2014. 11	4,380 (75.6)	228 (3.9)	173 (3.0)	771 (13.3)	207 (3.6)	30	5,789 (100.0)
2015. 11	5,993 (72.7)	357 (4.3)	254 (3.1)	1,276 (15.5)	362 (4.4)	47	8,242 (100.0)
2016. 11	7,304 (70.2)	433 (4.2)	326 (3.1)	1,699 (16.3)	582 (5.6)	56	10,401 (100.0)

*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기초한 협동조합 유형 분류에 따른 집계치. ** 연합회를 제외한 합계.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통계(www.coop.go.kr)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특히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고, 시민·주민조직

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생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서울시, 충남, 전북, 광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 조직의 설립을 촉발시켰고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3년 5월에 전국 27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 지방정부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대 조직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를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설정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국내의 성공 사례와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의 개요와 평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지닌 채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비영리기업과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사회적 성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농협 등 기존 정부통제형 협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적 기업에 대한 법적·세제적 인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들 내에서도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

협동조합기본법은 국회의 각 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법안을 성안하고 발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과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여러 부처와 조율하여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 제정 이후에 협동조합이 시장과 시민사회, 공공섹터에서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에 제1차 기본계획을, 2017년 1월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³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 명 달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교육 확대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며,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4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각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담당 공무원의 신설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고와 인가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립과 신고, 인가 과정을 원활히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나머지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홍보와 교육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했고, 중소기업

2 협동조합기업은 비영리기업과 목적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법과 계약법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단순한 비영리성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농협, 수협, 신협 등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존 협동조합에 관한 세제 적용을 볼 때, 전혀 협동조합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본질은 상호성인데, 비조합원이용에 대한 세제상의 인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자료 획득 가능.

업청 이외에 협동조합에 대해 인식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측면이 강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시장 참여 기회의 확대,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부처 차원에서 눈에 띄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⁴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에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기조는 제1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정책적 내용이 변화했다. 그동안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협동조합의 자본 및 매출액이 영세한 규모로 자생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고하기 위한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11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게 추가된 정책과제는 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등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과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의 개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 국세청, 지자체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휴면 조합의 해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3. 현행 협동조합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

20세기 초반에 서유럽 및 북미에서 주로 형성된 협동조합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립적인 정책이었으나, 협동조합이 지닌 사회적 순기능에 대

⁴ 기획재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 등 25건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는 물론 공공기관 우선 구매, 특례보증금액 확대 등 자금접근성 제고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나 협동조합 리더들의 평가를 볼 때, 이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탈리아나 캐나다의 퀘벡주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적극적 지원 정책이 실시된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상당히 고루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장종익, 2014).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방식이 지배적이고, 소수의 초대규모 재벌기업과 다수의 영세 기업 및 자영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특성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를 서술한다.

협동조합 설립 주체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 필요

협동조합은 설립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필요한 자원, 성공 요인 등이 서로 다르다. 유기농식품공동구매소비자협동조합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은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르고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요구사항도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현행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협동조합 유형 구분이 타당한지를 분석했는데, 이 유형 구분이 현재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의 고시 사항인 『협동조합 업무지침』(2012)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 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업자협동조합은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 판매·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소비·직원 고

용·자원봉사·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설립된 10,401개의 협동조합 중 86.5%가 사업자협동조합 혹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분류되고 있다(〈표1〉 참조).⁵ 사업자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신고된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어떠한 애로요인을 가진 사람들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 중 경기도 부분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표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중 경기도 협동조합의 유형 재구분

유형	분류 기준	조합 수
소상공인 협동조합	조합원 총수 중 개인사업자 조합원 수와 법인 조합원 수가 사업자 아닌 개인 조합원 수보다 많은 협동조합 +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사업체 경쟁력 강화, 조합원 수입 증가, 조합원 고용안정 등이라고 답변한 협동조합	159 (50.3%)
프리랜서 협동조합	사업자 아닌 개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 수입 증가, 조합원 고용안정, 사업체 경쟁력 강화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57 (18.0%)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 아닌 개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조합원 복지 증진, 사회혁신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환경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폭력 등 학교 문제 해결이 조합의 설립 목적이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58 (18.4%)
직원 협동조합	사업자가 아닌 개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를 차지하며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협동조합	5 (1.6%)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	37 (11.7%)
합계		316 (100.0%)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소재 316개 조합 중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은 37개(11.7%)였고, 신고 된 사업자협동조합은 259개(82.0%)였으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10개(3.2%), 직원협동조합은 6개(1.9%), 소비자협동조합은 4개(1.3%)로 모집단에 비해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중이 약간 높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동조합 현장 실태조사와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가들이 설립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Jang, 2017), 노동자협동조합인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공동체 증진에 기여하는 개인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된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

〈표3〉 기회재정부 협동조합 유형의 재구분 (경기도 실태조사)

필자의 기준에 의한 유형	조합 수	신고된 유형
소상공인협동조합	159	사업자협동조합 156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3개
프리랜서협동조합	57	사업자협동조합 55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개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58	사업자협동조합 50개, 소비자협동조합 3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개, 직원협동조합 2개
직원협동조합	5	직원협동조합 2개, 사업자협동조합 3개
사회적협동조합	37	—
합계	316	

5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직후에 기획재정부가 의뢰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협동조합의 설립 전·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철선 외, 2012),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 자활기억들이 사회협동조합으로 대거 전환되거나 아파트협동조합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3.3%에 불과하고 사업자협동조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고 있다.⁶ 기획재정부 실태조사표에 질문 항목을 활용하여 <표2>와 같이 분류 기준을 정하여 재분류한 결과, <표3>의 결과를 얻었다.⁷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신고 된 협동조합 중 적지 않은 수가 전통적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통적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발전 전략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발전 전략, 그리고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발전 전략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협동조합을 하나의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분류하게 되면 조직화 전략, 교육 방안의 수립, 정책적 지원 방안의 수립 등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유형 구분 개정을 제안한다.⁸

둘째,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에 대한 분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조합원 복지 증진, 사회혁신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환경보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폭력 등 학교 문제 해결이 조합의 설립 목적이라고 응답한 협동조합으로 했다. 이렇게 분류된 협동조합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사회적협동조합과 매우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무배당 규정을 총이익의 3분의 1 범위 내 제한적 배당으로 완화하거나 인가 과정의 경직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6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과학기술자협동조합의 유형화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종익(2015)을 참조할 것.

7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 외(2016)를 참조할 것.

8 2013년과 2015년의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실제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태조사표가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협동조합 유형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협동조합의 유형과 다르게 신고 된 협동조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협동조합 중에는 직원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자 조합원 100명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운수협동조합과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신고 되어 있다. 또한 전국 24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신고 되거나 인가 처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재정립과 유사 협동조합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 정립

협동조합은 공동체 혹은 민주적 조직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은 상호성mutuality이 본질이다. 이 점이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분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기업으로 분류했는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해볼 때 상호성mutuality 또는 이용자=소유자의 일치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수익창구금지조항)이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협동조합의 유형별 분류와 관련하여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제,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 임직원 겸직 금지 조항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지침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향후 법 개정 시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대상 판매 총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할 것,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구매하는 원료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50%를 초과할 것,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총 인건비 지급액에서 조합원노동자에 대한 총 지급액이 50%를 초과할 것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호성이 주요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이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Fici, 2013).⁹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적지 않은 사업자협동조합이 특정인의 개인 사업 확장을 위한 외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사장 혼자 일하고 조합원은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사실상 이윤추구형 개인회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추진해온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러한 위장형 협동조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8년 헌법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가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로 협동조합의 상호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조합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협동조합 운영에서의 조합원 참여 여부, 이윤배분 목적의 사업추구 여부 등이 확인된다.

9 1991년에 법적 근거가 부여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 충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체제 구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협동조합 홍보 및 설립절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하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이 5명인 협동조합이나 조합원 100명의 협동조합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재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정책적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지역별 협동조합설립 지원센터 혹은 중간지원조직 중심에서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와 협동조합 리더 등이 연계하고 학습하며 공공부문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협동조합 유형별 운영지원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중 체인형 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서비스형 사회적협동조합, 노동통합형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목적과 주체, 비즈니스모델이 유사한 협동조합끼리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를 복제하여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이 유형별 센터와 협력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영역이 없는지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시장 실패 혹은 정부 실패 상황에서 그 수요가 높지만 협동조합적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버넌스 비용 혹은 소유권 행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별로 출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택시운전사, 요양보호사 등 주체들의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경우에는 더욱이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교육이나

협동조합 설립 절차 컨설팅 지원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캐나다 퀘벡 등의 경우처럼 협동조합 기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 단계별·유형별 특성에 조응하는 지원금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는 조합원의 협동과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구축할 때 명심할 점이 있다.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동일한 종류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성할 때 협동하기가 쉽고 가치 창출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없이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협동조합 설립이 시도될 때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협동조합 섹터 내부에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도움을 받은 협동조합이 나중에 새로 설립될 협동조합을 도와줄 용의를 갖게 되는 상호성reciprocity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거미줄처럼 확산되면 이를 ‘사회적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배우게 되는 ‘협동의 의지, 노하우’와 더불어 소위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혹은 시민자본civic capita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 세제 혜택,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체제 등은 이러한 상호성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업자협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잉여를 처분하지 않고 잉여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 연대를 주도하고 통제해온 농협을 통해 고리대 청산에 성

공했고, 농협은 엄청난 물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조합원의 협동 의지와 노
하우, 사회적 연대의식은 축적되지 못했다. 이는 정부 주도 협동조합의 한
계라고 할 수 있으며, 부문별 협동조합 발전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
러한 점에서 협동조합 내에서 개별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중의 협동조합
간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철선, 권소일, 남상호 외(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기획재정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장중익(2014). 『협동조합 비즈니스전략 : 개념, 비즈니스모델, 사례』, 동하.
 - 장중익(2015). “협동조합의 유형화 분석 : 과학기술분야의 신설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2호 pp. 79~98.
 - 장중익.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방안』,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 2016년
11월.
 - Fici, A.(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
book of Cooperative Law*. Berlin : Springer.
 - Jang, J.(2017). “The Emergence of Freelancer Cooperatives in South Korea”, *An-
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88(1) : 75-89.
 - Woolcock, M, and D. Narayan.(2000). “Social Capital : Implications for Develop-
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
225-249.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설레었던 것은 연대회의를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만나 서로가 느끼는 고민들을 나누고 청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청년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여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인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부터였다.

장기적인 청년실업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까지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다. 청년의 노동과 주거, 생활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됐고 그 과정에 연대의 힘과 소중함을 느껴왔다. 그리고 그런 연대의 힘은 청년세대를 넘어 전체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우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특히, 협동과 상생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협동의 경험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와 힘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삶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바람이자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내가 경험한 청년들의 연대와 그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공감, 그리고 연대의 시작

2011년 1월 29일 촉망받는 작가였던 청년 최고은의 죽음. 나는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목이 메고 가슴 한켠이 저리다. 방 안의 냉기만큼이나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웃집 문 앞에는 이런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2월 중하순에는 밀린 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먼목 없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지병이 있었지만 생활고로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다른 일이라도 하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구도 없었나?”라며 그녀의 죽음을 바보 같은 죽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청년들은 이웃집에 부탁의 쪽지를 쓰면서 그녀가 느꼈을 존재에 대한 미안함과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다는 절망감이 마음으로 온전히 느껴져 오랫동안 너무 아팠다. 그녀의 죽음은 바보 같은 죽음이 아닌 사회적 타살, 고독사였다. 이제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나는 그녀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 같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조합원들과 마주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함께 울고 아파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도 극작가가 꿈이라며 가장 크게 아파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 늘 유쾌하고 밝은 친구라 더 불안하고 초조했다. 주변에 수소문도 해보고 집으로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며칠 후 청년유니온 페이스북 조합원 그룹에 그 친구의 글이 올라왔다. “친구에게 빌린 라면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빨리 그 친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도움을 주겠다는 동료들의 댓글이 우수수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디야, 내가 라면이랑 쌀 가져다줄게.”, “만나자. 우리가 있잖아.”, “우리 모금을 해볼까.” 아, 다 같은 마음이었구나. 댓글 속에서 동료들을 걱정하는 애타는 마음들이 느껴져 너무 고맙고 몽클했다. 그 중 내가 가장 몽클했던 댓글은 모금을 하자는 댓글 아래 달린 글이었다. “그런데 잠깐만, 우린 이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자칫하면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단순히 동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시혜적 마음

이 아니라 자칫 동료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건 같은 청년으로서 느끼는 공감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고는 작가의 죽음 후 청년유니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불안정 노동 청년층의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생활 전반으로 무너져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청년들이 연대해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로 2012년 2월부터 청년연대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처음 청년연대은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어떻게 은행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최고의 작가의 죽음을 대하던 조합원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연대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공감으로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협동은 가능하다. 협동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사전 연구와 실전은 달랐다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연대은행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연구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실전과는 많이 달랐다. 막막함에 전문가 분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현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기본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관계까지 끊어저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멈출 수는 없었다. 우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그 중 청년연대은행 설립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곳은 동자동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이었다. 서울역 고층 빌딩 뒤, 소

외된 작은 쪽방촌에 자리 잡은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은 그 이름처럼 마을 안에 있는 사랑방 같았다.

급할 때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 소외 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이 오천 원, 만 원 십시일반 돈을 모아 스스로 만든 은행, 청년연대은행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았다. 처음 청년연대은행 모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모은 출자금에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에서 받은 돈을 매칭해 대출사업을 위한 씨앗자금을 만들 구상이었다. 그러나 동자동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을 들은 후 고민이 바뀌었다. 이곳에서도 처음엔 쪽방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으니 사회적기금을 조성하면 많이 모일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 중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외부에서 그렇게 돈을 주는데 누가 우리 힘으로 은행을 만들자고 하겠나.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만든다고 해야 조합원들이 소주 10병 마실 거 5병으로 줄이고 출자하지 않겠나.”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은행을 만드는 일,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연대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힘들게 깨달음을 얻어가며 마침내 연대은행을 만들었지만, 돌아보면 경험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준비하며 만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한 청년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현재 각 지역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들이 활용하기엔 심리적 거리감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가 청년들이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고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유력한 활동임을 생각할 때,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장기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 좀 더 청년들에게 맞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구상할 수 있었

으면 한다.

초기 자본의 필요성, 응원과 지지가 주는 위안

설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정보와 경험 부족만은 아니었다. 당장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집중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했고, 생계를 위한 일을 병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도 필요했다. 다행히 청년연대는 행은 공동연구를 했던 인연으로 함께일하는재단에서 공간과 한시적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 지원은 청년연대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지원이었고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지원의 대가로 우리의 활동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꼭 설립에 성공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부담은 우리를 믿어준 재단에 대해 성공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의지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를 믿어준 곳은 또 있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하, 행복중심). 행복중심에서는 매년 조합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삶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협동복지기금’을 운영한다. 우리도 이 사업을 통해 2011년 청년유니온 이름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조합원들이 모아준 소중한 기금이기에 증빙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행복중심 측도 우리도 조심스러웠다. 한번은 청년연대은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위해 행복중심 실무자 분도 참석했다. 진솔한 이야기들로 인터뷰가 무르익어갈 때쯤 한 청년이 고시원 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집에서 용돈을 보내주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가장 먼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그다

음으로 식당에서 식권을 산다고 했다. 고시원 주변엔 서로 경쟁하듯 몇 %씩 할인된 식권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 자주 구매하게 되는데, 구매한 식권을 사용하려고 식당을 찾아가면 식당 자체가 없는 유령 식당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행복중심 실무자 분도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당황한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의연한 청년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다. 그날 청년연대은행을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닌 위로와 공감의 대안 은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인터뷰를 마치고 행복중심 실무자 분에게 기금을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지, 어디에만 사용하라는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기금을 받고 사업 초반이라 궁급해서였다. 질문을 받은 실무자 분은 “어디에 쓰셔도 괜찮아요. 청년연대은행이 잘 만들어져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단체로 성장하시길 빌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 어떤 지원보다 위로가 되고 든든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여러 공모전에 참여해야 했다. 출자금은 우리 힘으로 모을 수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진정성보다는 페이퍼워크로 평가받는 공모 선정 방식에 마음이 위축됐고 선정되고 나서도 복잡한 증빙 서류와 절차들을 보면서 지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행복중심에서 보내줬던 응원과 지지가 그리웠고 그 기억이 힘이 됐다.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에 설립 초기 자본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쟁사회이니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시스템적 접근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여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잠시 주춤하고 힘이 들 수는 있어도 그때의 기억으로 두고두고 힘을 내고, 또 누군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청년협동조합 모임에서 만난 청년언론협동조합을 준비한다는 친구는 요즘 수없이 좌절을 느낀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를 찾아 청년들이 직접 협동조합 방식으로 언론을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초판 발행비를 마련

할 길이 없어 아직 첫 발행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요즘엔 재무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힘내라는 응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청년들이 모여 협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문제는 일자리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다양한 실패를 통해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괜찮으니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패자금’을 지원 했으면 한다. 이 실패자금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당신을 믿고 있으니 마음껏 시도해보고 실패해보라는 지지와 응원이 될 것이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인 협동과 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인데 협동이 제일 어렵다

초기자본 마련, 자금 조달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나 협동을 일구어내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시행착오들을 겪고서야 겨우 감이 오는 것이었다. 대개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협동의 어려움 두 가지를 들자면 우선,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이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협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1인 1표를 가진 주인이며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대표의 권한은 모호해지고 역할과 책임만이 주어진다는 호소를 들을 때가 있다. 이는 대표도 구성원도 협동조합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청년들은 현재 협동조합 지원기관에서 진행하고 있

는 협동조합 교육이 협동조합의 기본 철학만 형식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들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의사결정 진행을 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권한은 있되 역할과 책임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협동조합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조직의 갈등 해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조합원 간 갈등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잘 해쳐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설립 초기 조합일수록 조직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과 갈등 해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년연대는행도 초창기 이 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교육 이름이 ‘협동을 글로 배운 그대에게’였다. 특히 청년세대일수록 경쟁식 제도교육만 경험했지 협동하는 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 해결 교육은 너무나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안 경제로서의 비전을 가지려면 사회적으로 협동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어릴 때부터 협동의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문제 해결을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사회적경제를 교육하고 사회적경제의 철학이 녹아든 교과서 내용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가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관련 학과 과정 설립을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종사자가 사회적경제 교육 참여 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확대해주는 방향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제언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는 청년들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들은 다양하다. 한 청년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5명만 모으면 다 될 것 같은 협동조합 광고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리스크가 적어 자본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하기에 유리한 형태라며 청년 실업의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만, 실제 지원은 교육지원 정도가 다인 현실에서 5명이 모이면 자금 지원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비춰지게 홍보하는 것은 청년에게 괜한 ‘희망고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역시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문제였다. 자금조달 문제는 일반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던 청년들의 발목까지 잡았다. 2014년 가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가 청년연대은행을 찾아왔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주택을 공급해보고 싶어 금융권에도 가보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을 찾아가봤지만 다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으며 청년연대은행에 찾아온 건 돈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청년협동조합으로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우리는 다음 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택공급 자금대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달팽이의 노력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합원 투표 결과는 99% 찬성. 나머지 1%는 상환 계획을 잘 세워서 빌려주는 것에 대한 조건부 반대였다. 조합원 100%가 당연히 청년 주거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공감했던 것이다. 그렇게 당시 청년연대은행 총 출자금 5,000만 원 중 3분의 1 규모인 1,500만 원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 대출했다. 주택 공급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민달팽이와 우리가 느꼈던 감동의 크기는 1억 원 이상이었다. 아직도 떠올리면 감동스럽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금 조달이 안 되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 협동조합들의 구조가 안타깝다.

이에 대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한영섭 이사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의 상황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동시에 기존의 제도권 은행에서도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을 평가할 때 기존의 주식회사와 다른 평가가 필요해요. 똑같이 경제적 이득만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 조직의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로는 더욱 자금을 원하는 만큼 얻기 힘들죠. 청년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주류 제도권 은행의 개혁을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글은행'의 관행을 혁신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금융협동조합의 합법화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청년 부채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생활고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다. 많은 청년들의 필요로 인해 현재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모델이 확산되어 청년자조금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 금융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정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단체 성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60%의 조합원 자체 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있

지만 40%의 별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청년금융협동조합에겐 시도조차 어렵다. 이런 청년금융협동조합들이 합법화되고 기부금융수증 발급이 가능한 조직 형태가 된다면, 후원을 통해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청년금융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공공에서 채우지 못하는 청년들의 금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이 육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컨설팅, 일자리연계,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열고 지원 분야도 청년 사회적경제 현황에 게 맞게 청년문제해결형, 지역문제해결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도 구상되어야 한다. 종합해볼 때 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청년들이 다양한 상상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치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회적경제를 확대해 일자리를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 해결도 일자리 창출에서 대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창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정책은 이미 일자리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전환됐고,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사회보장제도의 탄생은 지난 4년간 진행된 청년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이룬 성과였다. 이 거버넌스의 과정은 청년이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로서

바로서는 과정이었다.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청년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취·창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가 좋은 일자리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주요한 경제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사회혁신을 이끌어갈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은 그 활동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문제를 풀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함께 모색할 파트너로서 청년들과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만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1. 고령사회, 문제인가 기회인가?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예상보다 1년 빨리 고령사회¹로 들어섰고, 2024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²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초저출산의 기조로³ 초고령사회까지 94년이 걸린 미국은 물론,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2/3인 24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1 고령화율은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데,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2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이슈 및 성명(2017.4.18). '대한민국, 2017년 5월 고령사회 진입'
<http://cafe.daum.net/KARPKR/WuQF/2>

3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14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대만(1.11명) 등 4개국뿐이다.

장년층⁴의 현황을 65세 이상 노인과 50+세대⁵로 나누어 살펴보자. 잘 알려진 불명예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 빈곤율 상승 속도, 자살률은 모두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런 현상은 노후소득이 연금 등 공적부조 보다는 개인의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장제도가 요구된다. 한편 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포함된 50+세대는 인구의 20%를 넘는 큰 집단으로 고학력화 1세대이며 경제 성장과 변혁의 주력부대⁶이자 농업세대와 IT세대의 가교세대⁷이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의 뿌리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급격히 양극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기존 40대에 이어 새로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맡고 있다.

50+는 가족 구조와 직장생활 패턴이 급변하는 시기로, 노년 진입 전 마지막 준비기이면서 경제적으로 절정기인 동시에 종료기이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수입은 불안정해진 반면 부모 부양, 자녀의 학업과 결혼 등 지출은 여전히 많은 시기다.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으로 경제적인 위기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보고에 따르면 연금 수령 전 제2일자리 유무에 따라 70대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18.2%에서 39.7%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⁸ ‘일’은 소득뿐 아니라 건강, 가족과 사회의 관계 등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⁹

4 50 이후의 연령대를 일컫는 용어로 중년, 장년, 이를 합쳐 중장년, 신중년, 고령자, 노인 또는 영어로 시니어, 실버 등이 혼용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만 50~64세까지를 50+세대라 일컫기도 하고, 2016년 12월 국무회의에서는 ‘55세 이상을 가리키는 고령자’ 명칭 대신 장년(長年)으로 통일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50+세대, 노인 그리고 이 둘을 합쳐 장년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다.

5 최근 제1차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노인 진입 이전의 연령대로, 50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킨다.

6 황수경(2012). 『베이비붐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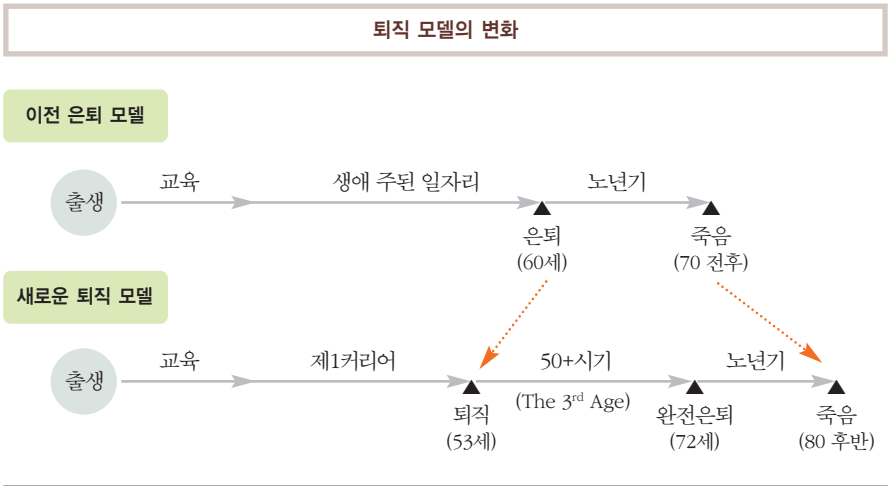
7 송호근(2013).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이와우.

8 조달호, 최봉(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9 강소량, 문상호(2010). 『중·고령자의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연구패널(KLoS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Milena Nikolova(2016). ‘Two solutions to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16/05/02/two-solutions-to-the-challenges-of-population-aging/>)

고령화, 조기퇴직에 따른 은퇴 모델의 변화와 제2커리어

고령화는 기존 은퇴 모델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평균 퇴직 연령인 53세¹⁰부터 완전은퇴 연령인 72세까지 약 20년 동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고령화 이슈의 핵심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차대하다. 제3기 인생 The Third Age으로 불리는 시기와의 겹치는 이 기간을 서울시에서는 50+라 하며 별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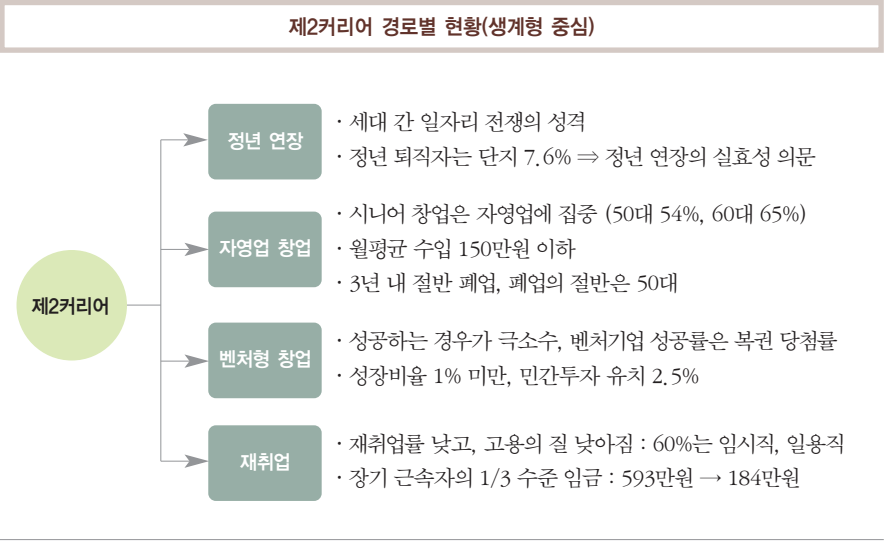
제2커리어의 유형별 경로

조기퇴직의 해결책으로 정년 연장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13명 중 1명이고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 빈번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퇴직 장년은 여전히 영리 활동에 머물며

¹⁰ 실제 1950년대생뿐 아니라 1960년대생 역시 상당수가 조기 퇴직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

¹¹ 서울시50플러스재단(<http://50plus.or.kr>)

또 다른 선택을 하지만, 창업 성공 확률은 매우 낮고 취업 역시 매우 어렵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도 평균 수입과 노동의 질은 한창때에 비해 1/3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는 현실이다.



인생 후반 커리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수입뿐 아니라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 추구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일부 전직 교육기관에서는 포화된 생계형 위주의 구인구직 매칭 방식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등 대안적 방식을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붐세대 퇴직을 맞이했던 미국은 개인적 보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가치와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제공하는 ‘앙코르커리어Encore Career’ 운동을 십여 년 전부터 전개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를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¹² 앙코르커리어로 유명한 여섯 가지 분야 중 하나가 비영리 분야인데,¹³ 미국의 비영리는 우리의 사회적경제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영리 외에 언급된 다른 영역

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하기 좋은 영역들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앙코르커리어로서 사회적경제 현황은 어떠한가?

미국 내 유망 앙코르커리어 영역



2. 앙코르커리어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새로운 역할 기대

2008년 금융위기 후 시장 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따뜻한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문제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힘과 비즈니스 원칙들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역시도 커지고 있다.¹⁴

2007년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난 현재 약 1,700

12 앙코르커리어 운동의 주창자인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의 저서 중 번역 출간된 2권의 책을 소개한다. 마크 프리드먼(2008). 김경숙 옮김(2009). 『앙코르 : 오래 일하며 사는 희망의 인생설계』, 프리티어 ; 마크 프리드먼(2012). 한주형, 이형중 옮김(2015). 『빅 시프트 : 100세 시대 중년 이후 인생의 재구성』, 한울.

13 마르씨 알보허(Marci Alboher, 2012). 김경희, 김신형, 홍혜련 옮김(2017). 『앙코르커리어 핸드북』,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개의 사회적기업¹⁵과 약 11,300개의 협동조합¹⁶이 만들어져 양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매출 규모, 이익, 고용 현황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¹⁷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GDP 대비 10%, 고용인구의 6.5%인¹⁸ 상황을 고려하면 GDP 대비 1%도 되지 않은 한국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 5년 내 최소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용 문제 해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경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⁹ 특히 공공복지, 사회서비스, 의료와 돌봄, 주거와 환경 등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가치 지향적인 분야에 있어서 정부 보다 효율적이고 영리 보다는 가치 중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장년층에게 사회적경제이고, 사회적경제에 장년층인가?

먼저 장년층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살펴보자. 인생 후반의 일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보람과 가치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여기에 더해 포화된 생계형 일자리에 비해 사회적경제가 갖는 실제적인 매력도 있다. 장년들이 선호하는 일의 스타일, 즉 탄력적인 시간제 근무 형태에도 적합할 뿐

14 2015년 다보스포럼의 연차총회에 사회적기업가 대표단은 비즈니스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 포용적 성장에 대한 추진력을 높이고 선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위한 슈왁재단(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의 Katherine Milligan 발표. <https://agenda.weforum.org/2015/02/three-lessons-for-leaders-from-social-entrepreneurs/>

15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2017.5.14. 검색.

16 기재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2017.5.14. 검색.

17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만 2만 8,200명을 넘어섬(길현중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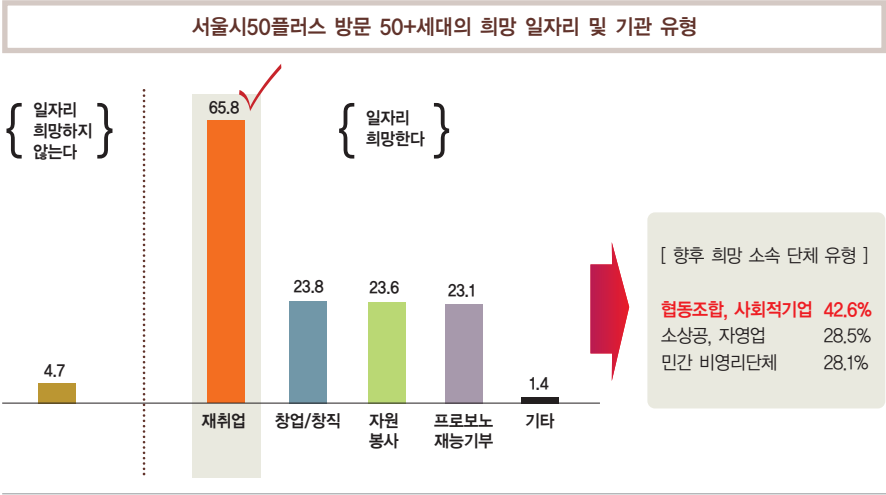
18 스웨덴 인구 9명 중 1명 사회적경제 활동... 유럽국가 GDP 10% 창출. 『중앙일보』 2014.7.24.

19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

아니라 생계형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고 사업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장년들을 조직화하는 데 유용한 방식을 제공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2016년 50+캠퍼스를 찾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인생 후반 활동과 일에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의 형태로는 재취업, 희망 유형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려 비중이 높았다.²⁰ 아직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향후 장년층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사회적경제 입장에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장년층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회적기업 대표나 중간지원기관과 인터뷰를 해보면, 장년에게 바라는 두 가지는 조직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판로 개척을 위한 네트워킹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이나 영리 분야에서 수십 년 이상 근무한 장년들은 좋은 후보군이 될 수 있다.



²⁰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를 찾는 5060세대 572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복 응답 가능.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슈 및 성공 요소

장년층과 사회적경제가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는 ① 인식의 전환, ② 자기 완결적 일처리 역량, ③ 소통 스킬로 요약할 수 있다.²¹ 장년층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고 배우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나 상사라도 직책과 역할에 걸맞은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기관이나 조직임을 고려할 때 스스로 실무를 완결적으로 처리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소규모이긴 하나 일부 비영리, 사회적경제 대상으로 일자리 수요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²²

비영리, 사회적경제 분야별 필요한 50+세대 역량	
분야	주요 요구 역량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식 보유 · 기존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업무 기술 · 회계, 관리, 법률 등 전문 역량 및 사회적 네트워크 보유
비영리 기관	· 비영리 섹터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비영리 구성원 포함) 세대별 단절 극복을 위한 소통 · 비영리 기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마을	· 마을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식, 경험, 연륜 보유한 중장년 인력은 많음) · 마을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관계 형성 및 소통 능력

21 2014~2015년 사회적경제 분야 대표 및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들 인터뷰 결과 요약.
22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5개월간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154개, 비영리 기관 15개, 마을 분야 22명 대상 전화와 방문을 통해 조사.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장년층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기관이나 중간지원기관 역시 장년층의 특성과 소통 방식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체계 수립 역시 중요하다.

3. 장년층과 사회적경제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새로운 인재풀로서 장년층을 확보하고 장년층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언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반으로서

퇴직 전 자원봉사 활성화와 전직 프로그램 혁신

퇴직 전 자원봉사의 경험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기회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재직 시부터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성화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본격화에 따라 인생 재설계와 전직 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나 비영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미국의 인텔이나 쉐프린에서는 퇴직 예정자의 비영리 분야로의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십의 일종인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 프로그램)’²³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일부 기관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면 획일화된 전직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퇴직 프로그램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²⁴

사회적경제 주 진입로인 협동조합 교육의 개선

장년층이 사회적경제로 진입하는 가장 주된 경로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휴면 협동조합이 적지 않고,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 규모 있는 성장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정부도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지원체계와 별도로 현장에서 장년층의 협동조합 진입 과정을 보며 느끼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손쉽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은 동호회가 아닌 사업이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조합원 간에 부담하고자 하는 자원과 리스크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무임승차 시비로 이어져 조합원 간에 불신을 낳기도 한다. 특히 장년층이 선호하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많이 발생한다. 조합 운영 의사결정의 규칙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화, 팀 빌딩(team building)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장년들의 협동조합 교육은 이러한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사례 중심, 현장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3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은 자사 퇴직 예정자들 중 희망자를 조사하여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돕는 1천 시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앙코르 펠로우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앙코르 펠로우 소개 : <http://encore.org/fellowships/>
- 인텔 사례 : <http://encore.org/fellowships/intel/>
- 퀄컴 사례 : <http://encore.org/qualcomm-encore-fellows-pilot-program/>

24 신나는조합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인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 22명 대상 전화와 방문을 통해 조사.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촘촘한 교육 및 통합된 지원 체계

장년층이 사회적경제로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식 전환, 소통의 기술, 일 처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자리 교육과 실제 일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개인 맞춤형 상담, 현장체험에 기반한 인턴십, 조직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간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인턴십으로서 서울시 50+보람일자리²⁵나, 장년취업인턴제²⁶ 지원사업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장년층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해주는 온·오프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장년층을 사회적경제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년층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내 수요를 발굴해 DB화하고, 수요에 적합한 역량 있는 장년층 인재풀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²⁷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서 매칭 방식뿐 아니라 수요·공급의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 매칭율을 높여야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사람, 즉 매칭메이커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기존의 일자리 방식과는 달리 섹터 간, 세대·계층

25 서울시 거주 만 50~67세 대상이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서울시 공헌형 일자리 사업(월 57시간 이내).

26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27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경우 재단 내 캠퍼스를 방문하는 50+세대의 경험과 희망 일자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욕구와 역량도 함께 DB화하여 축적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간, 지역기반 협력을 통해 그 무대를 확장해야만 효과적으로 발굴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을 지원하는 기관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간에 보다 긴밀하고 실제적인 협력 관계를 요구한다.²⁸ 각 기관의 성과 평가 기준도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등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단순 매칭을 넘어, 장년층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자원 교환 플랫폼의 진화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피터 래슬렛^{Peter Laslett²⁹}과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³⁰}는 그들의 저서에서 ‘제3기 인생’을 인생의 새로운 절정기로서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시기라고 조명했다. 그러나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진정 이 시기를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성장, 양극화의 몸살 속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은 실행의 주체인 인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글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도되어왔던 것들이며, 때로는 실패의 쓴 경험을 한 결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이 정신을 갖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28 서울을 예를 들면 장년층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노사발전재단 등과 사회적경제를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29 Peter Laslett(1989). *A Fresh Map of Life :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Weidenfeld and Nicolson.

30 William Sadler(2001). *The Third Age : Six Principles for Personal Growth and Rejuvenation after Forty*. Perseus Publishing.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장년층이 사회의 ‘짐’이 아닌 ‘힘’으로, 또 사회적경제의 객체가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위한 미션이며 우리 사회의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랑, 문상호(2010). 『중·고령자의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연구패널(KLoS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1.10).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 관계부처합동.
 -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29호(20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기재부 보도자료(2017.1.10).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 수립·발표」, 기획재정부.
 - 길현중, 안주엽, 이경근, 최율(2015).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윤정, 강현정(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
 - 정건화(2016).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생협평론』 제25호.
 - 마크 프리드먼(2008). 김경숙 옮김(2009). 『양코르 : 오래 일하며 사는 희망의 인생설계』, 프런티어.
 - 마크 프리드먼(2012). 한주형, 이형중 옮김(2015). 『빅 시프트 : 100세 시대 중년 이후 인생의 재구성』, 한울.
 - 마르세 알보허(2012). 김경희, 김신형, 홍혜련 옮김(2017). 『양코르커리어 핸드북』, 서울시50플러스재단.
 - Milena Nikolova(2016). ‘Two solutions to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Brookings.

- 홈페이지**
- 서울시 www.seoul.go.kr/
 - 서울통계 stat.seoul.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서울시50플러스재단 www.50plus.or.kr/
 - 협동조합 www.coop.go.kr/

오 김현주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한 가운데서 우리는 처음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대통령을 맞이했다. 페미니스트를 자임한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인권’ 이슈와 뜨겁게 충돌하며(사실상 불화하며) 한편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정치와 국가 정책 영역에서 리더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성평등’이라는 의제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서는 국가 비전과 연결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도 그저 ‘여성’들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다. 전개될 글에서 이 여성주의적 통찰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경제’에서 ‘다양한 경제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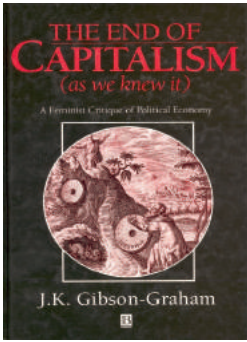
흔히 사회적경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장경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나머지’로서의 경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보완이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경제냐를 두고 무한반복의 논쟁을 낳게 된다.

하지만 페미니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 자체가 바로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가지고 왔던 물음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경제를 위치 짓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재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경제



집슨-그레이엄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초판본에서 자본주의를 시지프스 신화처럼 무한반복의 ‘신화’라고 꼬집었다면, 터키어판에서는 자본주의는 다시 로봇 이미지로 재현된다. 자본주의가 불변하는 법칙과 이미 정해진 경로를 가진 기계와 같은 이미지로 재현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불변의 법칙과 정해진 경로를 가진 기계와 같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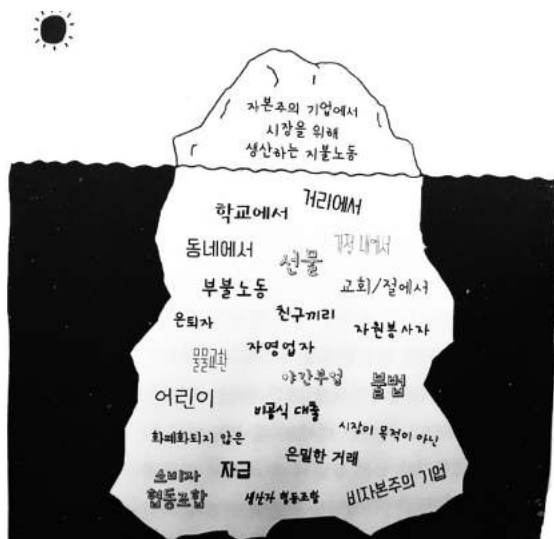


J. K. 김슨-그레이엄(J. K. Gibson-Graham),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1996년 초판 표지, 2011년 터키어판 표지, 2013년 한국어판 표지. (왼쪽부터)

우리는 영원히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고, 표지 그림에서처럼 사회적경제는 거대한 자본주의 로봇을 향해 돌을 던지는 키 작은 다윗 같은 존재에 다름 아니다.

이 두 가지 상징 이미지로 표상된 자본주의에 대한 ‘사고의 총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사고하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발견이자 저항이다.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은 그야말로 다양한 경제들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보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슨-그레이엄은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에서 경제를 ‘빙산’에 비유했다.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는 다양한 경제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다시 말해 빙산의 일각이지만 물 위에서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의 위치를 빙산의 일각으로 위치 지을 때 우리는 다른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수면 아래에 있는 더 큰 경제의 영역들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 경제들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빙산 이미지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기업에서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지불노동’을 제외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 중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경제적 영역들의 상호



J.K. 김슨-그레이엄, 제니 캐머런, 스티븐 헐리(2013). 황성원 옮김(2014).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Take Back the Economy』, 동녘. 49p 참조.

작용을 만들어낼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미니즘의 통찰이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하자.

빙산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들여다보면, 빙산의 드러난 일부 아래 숨겨진 다양한 경제 형태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조직을 가리키는 말처럼 사고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경제와 관련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은 빙산 이미지를 직감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로서 재현되고 설계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불리는 조직들 안에서만 정책과 제도를 분리하여 시행한다.

물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시된 사회적 문제들은 '빙산'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다양하게 조직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진단은 훌륭한데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종합적인 처방을 받지 못하고 마치 종합병원의 각 과들을 전전하며 원인을 찾는 환자처럼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을 방치하고 있다.

88

■ 사업개요

○ 5대 전략분야

분 야	소 분 야 (예시)
복지도시	○ 돌봄 (양육, 노인 돌봄) ○ 취약계층 문화, 체육, 생애, 세무, 중소기업 지원 (중) ○ 시간강사 (노년) 연금지원, 양육, 아동 비전 지원 등 ○ 장로교당 등
경제도시	○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생산물 생산, 판매의 조장 등) ○ 금융지원 ○ 중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 지원업체 육성 ○ 디자인, 패션 IT 등 창조형 산업도 경제 ○ 청년 등 일자리 확충 등
문화도시	○ 문화, 관광 (사물지리) 역사문화, 보존, 복합문화 및 체험 ○ 문화예술 지원 등 ○ 문화기반, 문화인프라 ○ 교육 (학교) 안주,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 평생교육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재생 ○ 재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역사, 지역, 디자인 개선 등 도시환경 ○ 도시농업, 로컬푸드, 도시농업, 도시농업, 도시농업 등 ○ 교통, 보행 (교통, 노인) 지원, 교통 서비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 생활환경 개선, 생활환경, 생활환경
시민의 주요되는 도시	○ 사회적응을 통한 사회서비스 ○ 주민참여형 활동 등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7년 5월 1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비 지정, 인증 획득)하여야 하며, 전환조건 미충족 시 사업비 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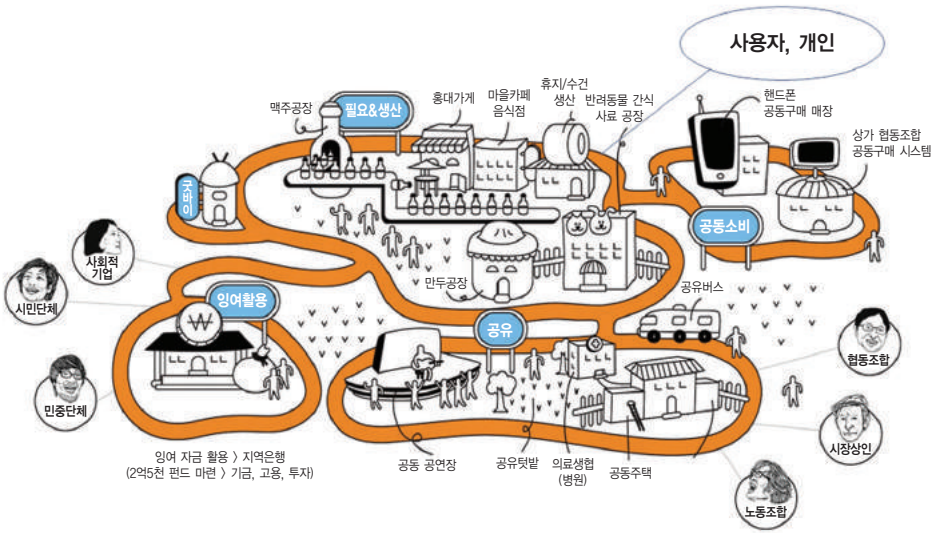
icoop

시장을 통한 지불노동만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실패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폐기나 변화를 주장하기에는 필자가 가진 시야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페미니즘의 통찰을 토대로 오히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척도와 기술 개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캐서린 김슨(Katherine Gibson)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으려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척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조직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지역운동단체 등에서 개별 소비자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공동체임을 표현한 그림이다. 출처: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고 말했다.¹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시민들이 경제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 기업, 시장, 재산, 금융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자본주의 기업들의 특혜를 없애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지역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재단 등의 설립을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모델은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게 모델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많은 울산에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빙산 아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사회적경제 이미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농촌과 도시에서의 사회적경제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한정될 수 없는 다양한 주체들과 자원을 통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의 통찰에 기반해서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성공 모델이 다른 지역에 걸고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들을 페미니즘에서 발견해냈다면, 다양한 모델로의 이행은 페미니즘적 실천이자 성공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간다면, 페미니즘의 통찰을 기반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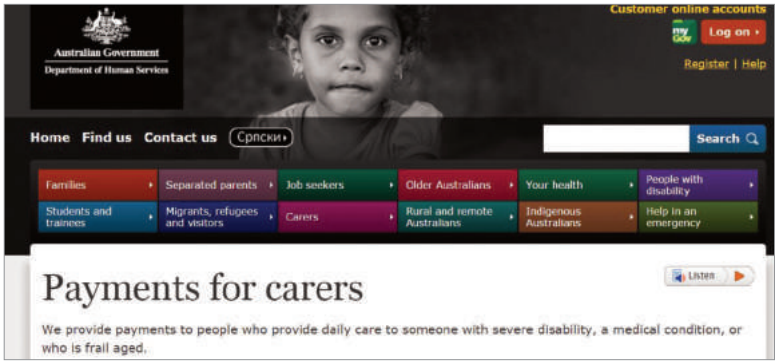
국가 차원에서 경제가 오직 지불노동으로만 구성된다는 가려진 상식을 뛰어넘어 부불노동의 발견과 측정,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부불노동이 사

1 '도시공동체의 탈환 : 시민이 경제의 주체다' 포럼, 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네덜란드 카스코, 호주웨스턴시드니대학교 공동주최(2017.4.15).

회와 공공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링, 대상 선정과 지급을 담당하는 관리기관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운동이 오랜 세월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지지해온 것들이기도 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0년 연구보고서²에 따르면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여성의 일과 가정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이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여성들이 질 나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해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문제인 정부는 공약집에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중 40%가 넘는 수치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까지 포함했을 때 50%에 육박하는 일자리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불노



후주 정부는 가족돌봄 노동 중 간병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 통계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2 윤자영(2010).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으로 감당해왔으며, 더 이상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화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여성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질 나쁜 일자리로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앞서 말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점의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로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는 형국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경제가 마지막 폭탄을 넘겨받고 자본주의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에 쫓겨 살아남는 것에 버둥대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척도와 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만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이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던지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기본소득’이다. 갑자기 웬 ‘기본소득?’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캐서린 김슨이 방한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주체가 어우러져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참여한 무리 중 예술가들도 있었다. 워크숍의 내용은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공동체와 경제에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해보는 것이었는데, 예술가들의 시간 보내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워크숍을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고, 여기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나쁜 점을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게 미술가들의 활동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돈이 도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작업할 때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영감을 얻고... 돈과 연결되는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위한 활동도 아니고... 되게 이기적인 활동이더라고요.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경제적 주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노동이 지불노동이든 부불노동이든 타인을 돌보는 노동,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동,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활동(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잣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언젠가 대박을 터트려 화폐 가치를 생산할지도 모르는 예술 노동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과 기본소득, 사회적경제가 어떤 연결고리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훌륭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잉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훌륭하게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마주치는 타자들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공유재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³

3 J. K. 김슨-그레이엄, 제니 캐머런, 스티븐 힐리(2013), 황성원 옮김(2014),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동녘, 16~17쪽 참조.

이 질문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 경제를 실천하는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불리는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의 통찰로 들여다보는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평가와 과제를 불러일으키는 전환의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총행복^{GNH}’지수 세계1위 국가인 부탄을 방문하고 온 뒤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 하면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장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탄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음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페미니즘의 통찰을 통해 ‘경제’를 재발견해야 한다.

좌담

참석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문재인캠프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서형수 국회의원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공동의장

사회 · 정리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SO

때 2017년 5월 18일(목)

곳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사회 이번 자리는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는 서형수 의원께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사회

적경제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구상과 실행을 보여준 김영배 성북구청장께 새 정부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들어 봅니다. 또한 문재인 캠프에서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쓴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사회적경제를 넘어 제3섹터를 아우르는 비전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준 송경용 신부님, 이번 19대 대선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며 저성장 시대에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장으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구체적 논의에 앞서 제19대 대선의 결과가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 개별적인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대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정상의 궤도에 서 흔들리던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난 10여 년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면 지난 30년간 —꾸준히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의 연대가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민관 협력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든다는 이해가 서로 필요하죠.

결국은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데

초기에는 신뢰를 쌓고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문재인캠프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지지하는

현재의 흐름이 일궈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력해왔지만, 실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체의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실천들이 제도나 정책 환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았습다. 객관적 조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의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선 지난 선거 기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현장의 요구와 기대가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한정지어 보더라도 그 요구가 상당했는데,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면 그 기대가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이 함께합니다. 앞서 김대훈 센터장께서 본래의 궤도로 움직이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지금의 결과는 제자리를 잡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혁 정부로서의

의미가 현재 새 정부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아직 사회적경제 영역이 세력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유경제의 육성,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됐을 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지지하는 현재의 흐름이 일궈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송경용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안건으로 ‘스텔라데이지호’¹ 침몰사고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지난 정부에서는 수색 작업에 무관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죠. 앞으로 정부가 직접 챙긴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연일 그동안 멈춰 있던 사회 전반의 기능들을 바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된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우

¹ 지난 3월 31일, 브라질 남동쪽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라데이지호는 25년 된 노후 화물선으로, 침몰 원인은 선체 균열로 추정된다.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으로 이뤄진 22명의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송경웅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의장

민관은 상호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는 민간의 역동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고

민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서

제도화되고 정책화된 영역에서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나타내는 한편, 사회적경제가 이제 사회, 정치, 경제의 책임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경제의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국가 정책의 중심부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 주체가 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과 자세가 요구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당면한 사회적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김영배 앞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경제가 꾸준히 축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연대와 협동의 힘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본다면 우선 헌법입니다. 탄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현실을 공동의 참여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외부 일정이 인천공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적인 한편, 이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반감을 어떻게 타개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의 열기를 어떻게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와 정권에 참여,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방정부도 다시 적극적인 도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제 국가 주도, 중앙정부 주도, 재벌 주도와 같이 규모화된 곳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나가는 것, 자기 삶의 영역에서부터 주변을 변화시켜가며 기초를 충실히 닦아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시대입니다. 이제 시민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형수 국회의원

**흔히 국가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개별 당사자의 역량이지만
정부는 그러한 활동이 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형수 이번 대선 결과 일반에 대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 선택권이 안착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사회 교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를 우선 살펴보면,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보수, 개혁 정부가 10년 주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인한 불안감이 일부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정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이주권자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 교체의 측면에서 볼 때 특권과 반칙이 팽배한 사회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의 의미를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무한경쟁과 격차의 심화, 국가와 권력에 대한 신뢰 부재 등으로 점철되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연대와 협동이 필요합니다. 격차와 불평등

의 해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인간 중심 가치에 기반하여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본경제가 감당하지 않았던 역할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SO

사회 대선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30~40대가 새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기에 현재의 기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긴장감도 뒤따르겠지요. 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기에 앞서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조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형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조차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문제 해결을 고민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우리 사회 문화를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인 실천이 함께 가야 하는데 여전히 둘 사이의 간극이 큼니다. 제도적 보완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라

는 큰 범주에서 경제적 성과는 일부겠지요. 현재의 시스템에선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성과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필요가 있지만 정부와 시장에선 수익과 효율의 문제로 무관심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 어려움, 재정적 한계가 그 과정에 존재하고 지속가능성의 담보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송경용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사회적경제 내부에서도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살림, 아이쿱 등 생협이 친환경 먹거리 운동,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식의 틀을 바꾸었지만 이를 범용적인 언어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생협이 일깨운 새로운 가치가 대기업들마저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붙은 먹거리를 판매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친 그 영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같이 지역사회와의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고, 해피브릿지협동조합처럼 노동자가 소유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안착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가져온 사회적인 영향력을 표현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용어, 친숙한 표현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가 서로 통섭되고 융합하면서 이뤄낸 성과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김영배 지난 정권을 지나며 사회적경제 영역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몇몇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부

죽한 상황에서도 성장의 기반을 닦아왔다는 것은 분명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적경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 역할이 보다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경제주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체들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 경제주체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퀘벡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노동조합, 정부, 민간기업의 기금 출자와 지원이 가능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협동조합의 등장, 지역 재생의 사례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주체 간의 관계와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의 발전 속도는 비례한다고 보는데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일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이뤄질 때 지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이끌어내 활용하는 사회적경제에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사회적경제 영역의 간담회를 지역별, 업종별로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트였다면 이후 이 물줄기를 관리한 것은 지방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형성보다 개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시 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환경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당사자

조직들이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지겠지요. 핵심은,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복원시키고, 활성화시키며, 자율적인 결정력을 높여가느냐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의 실마리를 찾아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동력으로 풀어나갈 때 사회적경제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지표를 이리 한 토대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에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시민자산이 사회적경제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훈 연대회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사회적경제 아젠다를 공론화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 및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활동했습니다. 대선이 잘 끝났으니 첫 번째 계획은 사회적경제 관련 세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일부 언론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에 대처하려 합니다.

앞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증대, 사회적경제가 가져온 성과에 관한 노출 증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 택시협동조합과 같이 택시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거나 퀵서비스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처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며 수수료를 편취하는 중간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별적인 성공 사례와 혁신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여러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사회적경제를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을로 표상되는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의 조직들이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에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약물의 처방, 치료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예방 중심의 의료를 실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원을 적게 하도록 하고, 항생제 처방도 적게 합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영 측면에서는 불이익입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자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가정신도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결사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특징과 경영 능력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동에 대한 책무, 공공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도덕적 책임,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 경영자를 키워내는 것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차량 구입을 위해서는 차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을 안의 주차장도 잘 정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차량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이에 대한 고민은 기업도 정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매번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서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급급합니다. 어쩌면 정부와 기업이 방임했기에 발생한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업도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혹은 개인이 전부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요. 다만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보이는 대기업에 비해 작지만 유연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 시스템을 혁신시키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하지만 외면해온 일들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실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회혁신의 사례를 마중물로 삼아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볼 수 있겠지요.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이러한 새로운 구조, 담론의 물꼬를 트는 것에도 있다고 봅니다.

서형수 김영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담론이라는 표현에 덧붙여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정책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경제의 작동 원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요,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현재의 시스템에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심인 자본경제가 안고 있는 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사회 서형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를 경제 운영의 원리로 이해한다면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향도 달라지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니다. 여전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반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적 환경, 정책적 기반이 어떻게 구성될 때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서형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장 구조와 격차의 극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자본경제의 원리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정책의 밑바탕에 버팀목 역할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경제가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원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가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개별 당사자의 역량 이겠습니다만 정부는 그러한 활동이 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조성자로서 정부가 금융체계의 구축, 인력 양성의 역할을 맡겠지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장벽은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의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금융을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도입은 특별재원의 확보 문제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부실 위험을 사회적경제 내부에서만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요구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까지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 서형수 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서형수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경제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산업경제정책 일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면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네,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겠지요.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 다른 분들도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는 금융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청소 서비스 영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는데 초기 창업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서의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타인자본이 중요한 창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은 금융 시스템의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이 없는 생태계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야기하면서 금융의 존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인선 김영배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최근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얼마 전, 한살림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생산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작물의 재배계약에 선수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연간 약 170억 원인데, 조달이 쉽지 않아 매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재배계약은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동의 경제, 연대의 가치가 짝 뜨게 됩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지요. 아이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조합원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유사금융이라는 문제 제기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는 인내자본은 물론,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규모화를 가져갈 수 있는 투자도 적절히 이뤄져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노력이 기본이겠지만 정책이, 제도가 이러한 노력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역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기획사업 중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해당 지역의 복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에 공동참여 할 때 기업의 CSR 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지요. 기업의 CSR 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 혹은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독려가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 외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김영배 대기업, 중견기업 중 사회적경제 조직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은 포춘(Fortune)지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의 8개 기준 중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적극 실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가정신이 사회에서 권장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대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소외,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서 구성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만 해도 상당한데 생협은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이 사회적경제 전체 영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회적경제로 접근하는 방법론의 확산이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경제위기 당시, 일반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 전략을 시계열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내부에서의 임금 조정,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 유지 전략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사회적경제 조직만의 부담 요소입니다.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태도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관 주도로 사회적경제가 흘러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새 정부는 협치를 특히 강조합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송경용 제도화의 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사회운동의 역동성, 아이디어가 확산되지 않고 고립됩니다. 국지적으로 그쳐 버리지요. 제도화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규제와 제약이 그것입니다. 법률, 제도, 정치적 환경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1990년대 초, 빈민지역에서 일을 할 때 빈곤문제 해결책의 하나로서 복지과 노동의 통합 모델인 자활센터를 제안하고 설립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와 처음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제도화했습니다. 이때 창조적,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민관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과 관이 서로 적대적이어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총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공공 영역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영역에서 민간이 어떻게 대응, 활동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동안 실험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민관은 상호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는 민간의 역동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고 민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서 제도화되고 정책화된 영역에서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김인선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민간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상의 제약으로 진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민간에서도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공동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업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중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 방향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부처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업무도 부처별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분화를 협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사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 안에서 경제의 방향성도 정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현재의 정치적 흐름이 경제 상황에도 충분히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국회의 고민,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과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자치분권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 주도, 중앙정부 주도, 재벌 주도와 같이 규모화된 곳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나가는 것, 자기 삶의 영역에서부터 주변을 변화시켜가며 기초를 충실히 닦아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시대입니다. 이제 시민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기초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대훈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자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구분에 익숙하지 않죠. 사회혁신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범인격으로 분류하는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연대회의 내에서도 각자의 영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갑니다. 물론 그동안 쌓여온 서로 다른 경험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를 깨기 위한 좀 더 좋은 방법은 공동의 사업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업종과 분야를 넘어 만들어지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 같은 다양한 공동사업의 경험을 누적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의 네트워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공동으로 일궈내는 경험 속에서 경계의 완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의 연대가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민관 협력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든다는 이해가 서로 필요하죠. 결국은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데 초기에는 신뢰를 쌓고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감과 연대,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도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정책, 그리고 당사자 조직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요한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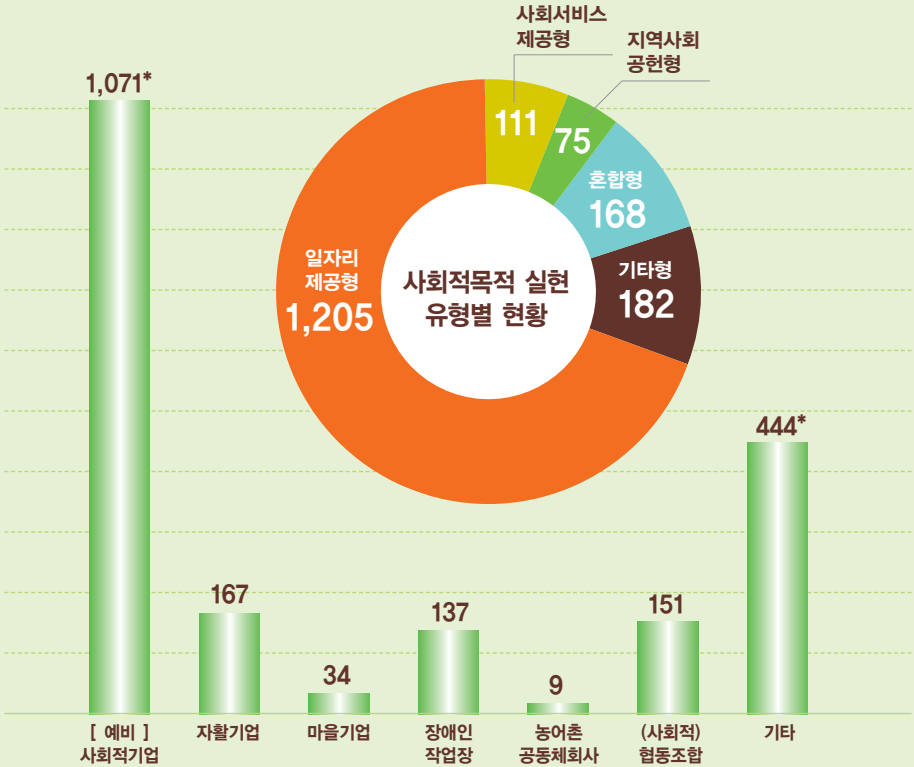
변형식

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1,741

인증
사회적기업
(2017. 5. 현재)



* 설립경로 중복 포함

사회적기업 1,741

1,74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된 이후 늘 주시하는 숫자다. 강의를 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시점의 인증 사회적기업 숫자를 확인하곤 한다. 2017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1,741개이다.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2,90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 만의 일이다.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치가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 이상 육성이었으니 나름대로 차근차근 목표를 실현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언급해왔으며, 그 결과로 청와대에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되었고,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니, 1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0년 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는 커녕, '사회적기업'도 "사회적인 게 어떻게 기업이나, 그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냐?"고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실은 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인 것과 '기업'은 형용모순이라 생각했다.

세 배는 빠른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빨랐다. 물론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 전부터 자활기업(1996)을 포함하여 맹아 형태의 기업과 조직, 사업이 등장했었다. 그 밑바탕에는 서구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있었음도 분명하니,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법 제정 해인 2007년에 최소 10년은 추가하는 것이 맞을 테다. 그러나 담론의 구성 시기로 보자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봤자 협동조합의 역사를 포함하여 150년 이

상 된 서구에 비할 바는 아니고, 5년 내에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허황되기 그지없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현실이 됐다.

인증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2013년(6년째)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1,012개가 되었고,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2010년에 이미 1,462개로 1,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니는 회사가 여행사인지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제1세계, 제3세계 불문하고 이런 속도를 가진 사회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유럽과 비교하면 체감 상 적어도 세 배쯤은 빠른 듯하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OECD 1위)과 최고의 IT 인프라, 24시간 업무가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생각하면, 산술적으로도 일추 세 배쯤의 속도가 나올 법하다. 다음 날 배송으로도 모자라 당일 배송이 기본이 되어가는 나라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도 큰 몫을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한 나라다. 시민사회가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육성한다는 말은 근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역설이지만, 한국의 현대사는 그 역전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계사적인 민주주의의 사례로 꼽힐 2016년 ‘촛불혁명’은 그 역설의 역설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에서 초기 정부 주도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생존율 89.9%

양적 성취와는 별개로, 지난 10년 개별 사회적기업이 치했던 현실은 ‘악전고투’였다. 2015년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31.6%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은 75.6%에 달한다. 해석하자면, 사회적기업의

1/4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영업외수입을 통해 당기순손실을 면하고 있고, 1/3은 당기순손실로 적자 상태라는 말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기업은 ‘좀비기업’ 양산 제도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정부 지원 의존적인 사회적기업을 양산한 결과라고도 했다. 정부 지원이 끝난 사회적기업이 곧 줄도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표현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89.9%였고,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86.5%였다. 이는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1%보다 높고, 3년 생존율 38.2%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일반기업보다 월등히 적자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좀비’라는 비아냥은 칭찬인지도 모르겠다. 죽지를 않는다.—수치를 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안에 사회적기업의 ‘악전고투’가 담겨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두 마리 토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반대로 가장 큰 성과로 일컫는 것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종종 이 두 가치의 동시 추구를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표현한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니, ‘두 마리 토끼’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리더급 인사들이나 정부 관계자조차 아직까지도 이런 표현을 쓰는 마당에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사회적기업가로서 나는 결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대로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해야 한다는 인식.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계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돈도 벌고 착한 일도 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열심히 하는 대기업 같은 것일 따름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에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상반된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 둘은 한 사업 행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숙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잡지를 제작해 팔고, 제3세계 커피농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 커피를 수입해 파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실현할 사회적 가치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이유가 없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 교수는 이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라 불렀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UN이 새롭게 제정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선(Bottom Line)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이중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지속가능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것은 차라리 ‘삼위일체’ 같은 것이지 ‘두 마리 토끼’따위가 아니다. ‘양날의 검’이라면 또 모를까 말이다.

‘맨땅에 헤딩’과 ‘악전고투’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가들은 무모한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중증장애인들을 50% 이상 고용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건, 영리기업

을 운영 중인 사장들 입장에서는 ‘미친’ 일이다. 노숙인, 교도소 출소자, 위기 청소년, 탈북민, 결혼이주 여성 등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캄보디아 오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일, 이동약자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극장을 운영하는 일, 걷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 숲을 조성하는 일, 이런 일들이 상식적인 ‘영리기업’의 논리에서 가당키나 한 일일까. 그런데 그런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가들이다. 그들에게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무(모)한도전’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땀땅에 헤딩’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돈이 되는 사업이거나 혹은 작은 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했거나 정부가(혹은 시민사회가)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이 되지도 않고, 작은 지원금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사회적기업은 그 악조건을 뚫고 ‘돈이 되는’ 일을 만들어낸다. ‘돈이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의존적이지 않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일이 쉬울 리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악전고투’는 필수불가결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돈을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기업이 자신의 노동력이야 자원봉사라 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함께 일할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양산을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다. 제도 금융권은 사회적기업가가 하려는 일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않는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급여도 급여려니와 이 일은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없으면 함께하기 어렵

다. 단순 직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전문성이 필수인 파트는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대표란 자는 지금껏 살아오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든 일들을 떠맡으며 해결해야 한다. 고용은 정규직으로, 최저급여 이상은 어떻게든 실현해야 하며, 생활급여까지도 제도화한다. 적자가 나면 가용 가능한 모든 돈을 끌어 모아 투입한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아직 그대로이므로,

지켜야 할 각종 규제와 범규는 다 지켜가며, 시장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산 초저가 상품과 각종 편법과 눈속임으로 무장한 왜곡된 시장에서 경쟁하기. 지금 살아남은 모든 사회적기업은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기업들이다.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그 안에 촘촘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그들이 대단한 영업이익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좀비’라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그 생존 자체에 격려의 박수를 보낼이 마땅하다.

정부 주도, 인증제 중심의 시대는 마감했다

사회적기업이 10년을 성장하는 데에는 정부의 제도와 지원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사회적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각종 컨설팅 지원으로, 판로 지원으로 돕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마련이다.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에 역으로 제도의 유효기간 만료는 더 일찍 도래했다. 특히 현행 인증제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위기를 재촉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제도로서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정작 인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기업은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

거나 가치가 높지 않은 기업은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를 쓰고 인증을 받으려 한다.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무장한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되레 기피하는 반면, 지역의 중소 규모 영리기업들은 공공구매 시장을 노리고 인증 삼수, 사수를 무릅쓴다. 그 결과는 3년째 2,900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증가 추세의 확실한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인증을 저어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낡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사회적기업을 ‘소셜벤처’라고 부르거나 ‘임팩트’라는 표현으로 애드orns. 취약계층의 특성상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은 대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부 업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인증에 뒤이은 지원제도 역시 일자리창출 중심의 기업 이외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저임금 일자리에나 적합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과 공공구매 중심의 판로지원은 일자리창출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에게나 적합한 체계다. 세 번째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인증을 받아보려 해도 인증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공정무역처럼 국제개발형 사회적기업은 아예 인증을 해주지 않아 어거지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부러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를 기획하는 식의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판이니, 제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이 제도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 셈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일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자리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활기업과 고용노동부의 맥락이 한국에 사회적기업 담론의 탄생 주역임은 분명하지만, 국가별로 20만 개에 육박하고 GDP의 5~10%를 차지하는 유럽과 북미, 일본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정부 주도 인증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지원 정책이 일자리창출형에게 아주 효용이 높으려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민간 혹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 운용의 한심한 결과다.)

사회적기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ies)’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법인격으로서, 배당과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대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당사자성,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연대와 협동

정부 주도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당사자’ 혹은 ‘민간’ 주도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당사자’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결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음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 역시 한국적 특수성임은 분명하다.

‘당사자’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 안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실행을 위탁하거나 위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광범위한 생태계 요소를 구성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이른바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저해해왔고, ‘당사자’는 그들대로 열악한 협동과 연대의 환경에서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거버넌스’를 경안시켰던 맥락이야 충분히 유추 가능한 일이니 사실 정부 주도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 혹은 ‘민간’의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만을 놓고 보더라도 (예비) 사회적기업 2,900개 중 980개의 기업만이 회원사로, 조직율이 34%에 불과하다. 전국에 17

개의 지부가 있으니 지부별 평균 회원사는 60개가 채 되지 않는다. 회비로는 지부 운영조차 불가능하다. 대개의 지부는 지부 대표나 이사들의 헌신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협력 조직들은 부족한 지역의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주체가 되거나 정부나 지자체 전달 체계의 일부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모색

다행히 전국적으로 새로운 협동과 연대의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들이 판매를 위해 ‘종합상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금융으로서 ‘사회혁신기금’이나 ‘공제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가 운영 중인 공제기금은 지난해 기금 규모가 20억을 돌파했고, 올해 말 30억을 무난히 달성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가 하면, 사회주택 분야의 의미 있는 업종 협회도 결성되었다. 사회적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이미 10개 이상이 설립 운영 중이다. 바야흐로 의미 있는 협동과 연대의 실험이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음은, 10년간의 악전고투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비로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임계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은 희망 섞인 기대를 가져본다.

새로운 정부는, 주도하는 자리에서 파트너의 자리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사회적기업과 함께 해결해가는 데 노력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우리 스스로,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규모 있는 노력과 도전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해본다. 새로운 10년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슈



통계로 본 협동조합 1만 시대

김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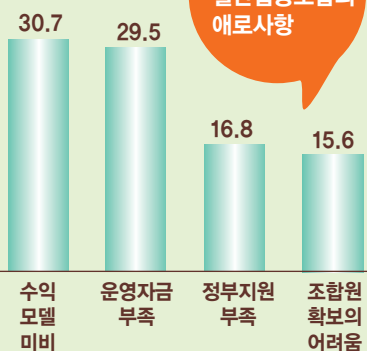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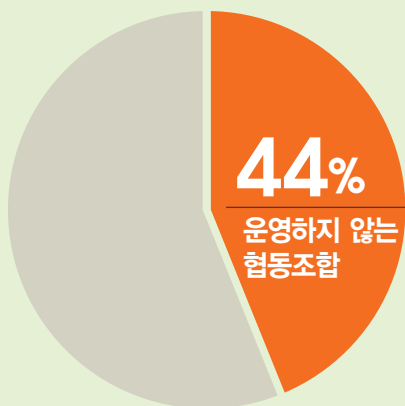
한겨레 선임기자



11,354

협동조합 수
(2017. 5. 22 현재)

{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협동조합
1,362 }



※ 위의 통계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전수조사는 2014년 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6,235개 협동조합의 기관장, 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2011년 『한겨레』에 실었던 협동조합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그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를 번역 출간했고, 이듬해에는 유럽 협동조합 취재기를 담은 『협동조합, 참 좋다』란 책을 펴냈다. 그때만 해도 협동조합 하면 농어민을 도와주는 준 정부기관 정도로 인식되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다. “협동조합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식회사와 다른 형태의) 기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적인 복지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좋은 기업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계몽이 필요하던 때였다. 유엔^{UN}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2012년 12월 마침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그 뒤, 이 글을 쓰는 2017년 5월 22일까지 1만 1,354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일반협동조합이 1만 616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680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각각 53개와 5개나 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의 농협, 수협 그리고 생협과 의료생협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4년 만에 대한민국이 협동조합 1만 시대를 맞았다. 격세지감이다. 단기간에 양적인 풍요를 이뤄내는 데는 큰 성공을 이뤄냈다. 질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보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서 신생 협동조합이 기대했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가? 협동조합 스스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협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공동체 숙성의 산물이기에, 날카롭게 비판의 칼을 들이댄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자칫 우물가에서 숭늉달라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도 협동조합 1만 시대를 맞은 지금쯤은 지난 4년여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냉정하게 정책적 메시지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우리는 협동조합이라는 익숙지 않은 옷을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 입어보았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청와대에 협동조합 정책 등을 관장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직을 신설한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좌초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객관적인 통계 조사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1만 시대를 점검해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말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한 최근의 보고서를 주로 참고했다.¹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고서도 살펴보았다.² KDI는 9,738개 협동조합 중 조사에 응한 3,903개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으며, 그중 500개 일반협동조합과 100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벌였다. 기획재정부 제2차 실태조사는 2014년 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6,235개 협동조합의 기관장, 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내실 못 갖춘 1만 협동조합 시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 해에 협동조합은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수가 2013년 한 해에 3,111개로 가장 많았다. 2014년 2,706개, 2015년 2,299에서 2016년에는 2,000개 정도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4개가 설립신고 됐고, 2014년 이후 121개, 2015년 178개에서 2016년 200개 정도로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다. KDI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결과에서도 협동조합 검

1 최슬기 외(2016).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 이철선 외(2016).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색어 수는 2013년에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 검색어 수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설립신고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도소매(25.2%), 교육(12.3%), 농업어업(11.1%), 제조업(8.8%), 예술·스포츠·여가(8.6%) 순서로 많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30.5%), 보건·사회복지(28.5%) 쪽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일반기업 창업에서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신설 협동조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문제점이 금세 손에 잡힌다. 설립신고만 해놓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너무 많다. 기획재정부 제2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전화 설문에서는 전체 9,738개 중 60% 가량인 5,835개 협동조합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의 다수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응한 3,903개 중에서도 42%에 해당하는 1,641개 협동조합이 매출이 없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협동조합이 1,36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았거나, 운영하더라도 매출이 없거나, 이미 폐업을 한 협동조합이 전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없는 일반협동조합은 수익 모델 미비(30.7%), 운영자금 부족(29.5%), 정부지원 부족(16.8%), 조합원 확보의 어려움(15.6%)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폐업한 일반협동조합이나 매출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경영 불안정성은 재무 관련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2차 실태조사에서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총 출자금은 4,069만 원(사회적협동조합 6,034만 원)에 그쳤다. 이는 2013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창업비용 7,257만 원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쟁력 취약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평균 총 부채액도 일반협동조합은 1,648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은 2,153만 원에 머물렀다.

심각한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물이해로 금융기관 이용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KDI의 면대면 조사에 응한 500개 일반협동조합 중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곳은 겨우 6.8%인 34개에 불과했다. 제2차 실태조사에서도 금융대출을 받아봤다는 응답이 9.2%로 나타났고, 그나마 협동조합 1곳당 평균 대출금 또한 1,014만 원에 불과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아예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협동조합 출자금 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간주되는 등의 한계로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1인 출자금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협동조합의 ‘미덕’ 또한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대출 불가의 빌미가 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세제상 불이익도 받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등 기존의 8개 특별법상 협동조합이 누리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활용 또한 불가능하다. 회사채 발행 대상도 상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어, 협동조합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협동조합 보증제도의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활용 실적은 178건, 52억 7천만 원에 그친다.

경영공시 대상인 51개 협동조합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 이상인 규모 있는 협동조합들이다. 그러나 이들 협동조합 또한 경영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을 올린 협동조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3개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만을 따지면 무려 41개 협동조합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영업이익을 낸 10개 협동조합도 영업이익률이 저조했다. 6개는 0~5%에 그쳤고, 4개만 5%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20~-50%의 영업손실을 낸 협동조합이 14개, -50%의 영업손실을 낸 협동조합이 15개나 됐다.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의 절대다수가 영업손실을 내고 있고 영업손실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영업손실을 초래한 첫 번째 이유로 판매관리비 과다를 꼽았다. 절반에 가까운 23개 협동조합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판매관리비로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40% 미만인 협동조합은 20개에 불과했다.

KDI는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를 설립기→성장기→안정기→쇠퇴기→폐업기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설립기와 성장기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500개의 일반협동조합 설문에서도 설립기와 성장기 협동조합이 각각 260개(52%)와 124개(24.8%)로 조사됐다. 대부분 설립 초기인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사업 추진 3년 동안 1,320개 협동조합 등이 평균 4,51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정부지원에 기대는 의존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협동조합 쪽에서는 직접 자금지원, 물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KDI 조사에서는 그 필요성을 모두 4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점수로 인정했다. 다만, KDI의 실증분석 결과 공공부문 지원금이 협동조합의 경영 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쪽에서는 정부지원을 크게 기대하지만, 그것이 협동조합의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 총 공급액이 87억 원에서 2015년 264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협동조합의 영세성으로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출발한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 공급액은 2015년에 무려 5,975억 원에 이르렀다.

경영 성적은 좋지 않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4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은 평균 4.2점(5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일반협동조합은 조금 낮은 3.7점(5점 만점)을 주었다. 조합원 서로의 신뢰 수준과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동료 조합원을 신뢰한다’,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동료 조합원과 조합 일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는 항목에서 모두 4점 이상(5점 만점) 점수가 나왔다.

제2차 실태조사에서, 연합회와 협의체 등의 가입률은 39.9%로 제1차 실태조사 때의 9.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연대 비율은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회의적인 응답이 제1차 때의 14.2%에서 47.5%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조사에서 조합원들의 평균 급여는 월 139만 5천원이었으며,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제1차 때의 66.9%에서 제2차 때는 96.7%로 크게 높아졌다.

정책 제언 : 무엇을 할 것인가?

협동조합 1만 시대의 실상을 더듬어봤다.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궁극적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KDI는 협동조합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지난 4년여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설립신고만 했지 문을 닫은 협동조합이 수도룩하다.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조차 다수가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자금 확보와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연대와 협력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7년 5월 말 기준 58개의 연합회 조직이 설립됐으나, 지역별이건 업종별이건 연합회가 실질적

인 대표성을 갖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동조합들 스스로 연대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KDI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나타냈다. 개별 협동조합들의 여러 성공 사례에 주목했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을 토대로 보완적인 기업 구실을 하며, 그 과정에서 다각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의 청소용역업체인 ‘클린광산협동조합’ 사례를 들어, 일반기업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도 높고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인 ‘산들어린이집’의 사례를 들었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전달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복지의 질적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자본의 축적을 도모하고 다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반의 성과를 도모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장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이 사업체이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간에 급하게 성장시키려 하기보다는 내실을 키워야 하고, 경쟁력을 잃은 협동조합은 도태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무엇보다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역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자발적 협동조합의 발달이 억제되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주식회사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한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사해 선제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반시장적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욕구에 부응해 사업을 추진

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협들이 유기농 시장을 창출한 것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 방식이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 전략의 모델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동조합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의 여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거나 민간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을 기존 제도권 금융과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투자기관, 지역개발기관 등의 다양한 비영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의 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농협·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상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 협동조합 정신과 경영 교육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성공 모델을 개발해 고용 친화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협동조합의 정치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경계했다. 민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은 파벌 싸움, 돈 선거, 정치권 유착 등의 부작용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강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조금하게 나서서 성과를 거두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

했다. 연합회 같은 중간지원체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생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제1, 제2원칙 해설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수채화 〈나무와 연못(Trees and Pond)〉.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화가, 예술비평가인 동시에 위대한 사회개혁 사상가였던 러스킨은 영국 협동조합인들과 마하트마 간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Wikipedia Commons)

협동조합 정체성을 이루는 일곱 개의 협동조합 원칙을 나무의 생장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 제1원칙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는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다. 이 토양에서 협동조합의 뿌리인 제2원칙(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과 제3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이 잘 뻗어나갈 수 있다. 기름진 흙 속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는 뿌리 덕분에 협동조합이라는 나무는 ‘자율과 독립(제4원칙)’으로 버티고 서는 것이다. 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고, 건강한 줄기와 이파리가 생장해서 풍성한 그늘을 만든다. 같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고 다 비슷하게 자랄 것 같지만, 그중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 세포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가지를 뻗어 푸른 잎을 질게 드리우는 나무가 있다. 그것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곧 ‘교육¹, 훈련 및 정보 제공(제5원칙)’의 힘 덕분이다. 이렇게 성장한 협동조합이라는 나무는 이윽고 숲을 이룬다.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제6원칙)’으로 만들어지는 숲이다. 큰 나무 한 그루도 그늘과 등지와 열매를 제공하며 못 생명을 기르지만, 나무들이 모여 이루어진 숲은 생태계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생명을 낳고 길러낸다. 천둥번개로 한두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더라도 숲이라면 못 생명들이 살아가는 터전은 계속된다.

다시 말해, 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은 협동조합이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기까지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필수적 요소들을 정렬한 것과 같다. 따라서 어떤 원칙은 따르고 다른 어떤 원칙을 무시하거나 폐기한다면 협동조합이라는 나무의 생장은 왜소해지거나 심지어 말라죽게 된다.

이처럼 일곱 개의 협동조합 원칙은 낱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통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의 지침을

1 영어로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의 라틴어 어원의 핵심은 ‘양육하다(educere)’, ‘마음의 힘을 고집내다(educare)’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지식을 외부에서 주입한다는 의미가 큰 한자어 教育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교육학자 오바나 기요시(尾花清)는 ‘스스로 성장함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education에 합당한 용어는 ‘助育’이라고 주장한다(2016.11.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education의 어원에 관해서는 ONLINE ETYMOLOGY DICYIONARY 참조.

차례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지침서의 해설은 각 원칙마다 ‘1. 서론 - 2. 용어와 구문 해석 - 3. 해설 지침 - 4. 향후 고려사항’ 순으로 서술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의 현실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나갈 것이다.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 사회, 인종, 정치 또는 종교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제1원칙은 19세기 전반 협동조합운동의 초기부터 실천되어왔으며 협동조합의 첫 번째 원칙으로 등장할 만큼 핵심적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전언은 참여자들이 협동조합을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동조합이 결사의 자유에 기초함을 표현한 것이다. 차별 금지와 포용성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에서 비롯된다.

자발적인 조직이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결성하는 조직으로서 그 권리는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임의적인 제한을 두거나 전횡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이어서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라는 구절에서는 협동조합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은 어떤 특정한 범위, 제한된 수의 조합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일정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노동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 규모

가 한정되어 있는 것과 같다.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이 뜻하는 바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이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 responsibility’은 자신이 가입한 협동조합에 관여하여 다루거나 통제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는 자연인, 사람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사업을 펼치면서 연대하여 협동조합연합회라는 2차 조직, 연합조직들의 연합이라는 3차 조직을 결성하면서 법인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었다.

제1원칙에 대한 해설 지침 중 몇 가지를 한국 협동조합의 현실에 비추어 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조합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세기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초기 협동조합인들은 참정권이 없었던 여성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조합원 자격을 자산의 여부로 가름하지도 않았다. 민중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회 진보의 편에 섰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세계로 전파된 협동조합들 중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정부가 조합원 가입을 의무화하여 제1원칙을 저버린 사례들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유기업 모델에 경도된 나라들의 법제도는 결사의 자유를 지닌 시민들의 협동조합 결성은 등록 및 인허가, 세제 및 행정지원체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여서 사실상 결사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된다.

덧붙인다면, 정치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결사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기업 활동의 모든 기준이 주식회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은 마치 ‘민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바닷물고기’ 취급을 받는다. 협동조합 제1원칙은 이러한 취급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의 결사(=자발적인 조직)가 경제활동을 할 경

우, 창업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법제도 정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깨우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이며 voluntary”란 의미가 강제만 아니라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되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협동조합은 달리 말하면 주인공인 조합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과 활동을 통해서 함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다. 조합원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은 곧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이며 이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야말로 자발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선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전히 ‘불우이웃 돕기’란 이미지가 크지만 자원봉사는 자선이 아니라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위키피디아)이다. 협동조합의 자원봉사 활동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위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을 망라한다. 한국 협동조합 중에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이 얼마나 살아 있는가. “많은 조합원은 조합의 편익을 얻으려고만 했을 뿐 조합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키울 생각은 없었다.”²는 한국 협동조합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생생한 과제일 것이다.

전력협동조합이나 통신협동조합, 보건의료협동조합 등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인 경우, 해당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가.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들이 이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합원의 이용 범위를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지 않고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오히려 명목상의 조합원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어서, 조합원제가 ‘조합원을 중심에 둔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2 박성재 · 박준기 · 신기엽(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11쪽.

조합원 중심이야말로 협동조합 7원칙에서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개념이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로 삼아야 한다. 회원제^{membership}는 경쟁 시장에 있어 사업적인 가치가 있음이 증명된 발상이고 많은 기업들도 회원할인제, 마일리지제도, 우수상용고객제도를 운영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제도가 이들 기업의 회원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조합원을 협동조합의 이용자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존재로 대우한다는 점이다. 한국 협동조합은 이 점에서 매우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문호는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때 ‘차별’의 범위는 원칙 본문에 열거한 것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어떠한 개인적 특성까지도 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문의 서술 방식은 유엔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과 상통한다. 그런데 해외에선 여성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세와 SEWA여성연합은 인도에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기술을 제공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므로 오히려 “성차별 없이”라는 제1원칙에 부합하다.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이후 현대사회는 또 변화해왔다. 당시에는 부상하지 않았던 개인의 성적 지향 다양성이 현 사회에는 문화적인 요소로 부각되어 “성차별 없이”는 자연스레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동조합은 차세대 조합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선 차세대 참여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청년과 학생협동조합을 적극 장려한다.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세대는 협동조합을 지속,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지침서는 향후 고려사항으로서 제1원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기한다. 하나는, 비조합원과의 거래 문제이다. 조합원을 중심에 두는 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분량이다. 만약, 비조합원과의 거래 분량이 조합원과의 거래 분량을 초과한다면 특히 제1원칙의



영국 소비자협동조합 '코퍼라티브 그룹'의 협찬 티셔츠를 입은 성소수자 축제, 맨체스터 프라이드 참가자들³

3 기사 출처 : <http://www.manchestereveningnews.co.uk/news/local-news/co-operative-sponsors-manchester-pride-fourth-693403>

적용 여부를 포함해서 그 원인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이들이 비조합원인 채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조합원 우대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거꾸로 (장기)미이용 조합원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는, 크고 복잡한 형태의 협동조합 그룹에서 제1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많은 협동조합의 자회사를 거느린 협동조합 그룹에서는 제1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적용 여부를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협동조합 자회사의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차별적인 문호 개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원칙 :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민주 조직으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남녀 대표들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진다.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1표)
다른 연합 차원의 협동조합들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이 원칙에 관한 지침서의 서론은 “민주주의란 단순한 개념이다. 구성원의 다수결을 통한 거버넌스⁴, 조직의 통제다. 그러나 실제론, 사람이 만든 어

⁴ 거버넌스는 국가·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민관 협력 또는 협치라고도 부르고, 기업에서는 지배구조라고도 부르기도 하여 그 주체와 적용 범위에 따라 용어가 다르므로 거버넌스라고 사용한다. 협동조합 거버넌스는 “협동조합 운영과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경영하는 과정과 구조”라고 정의한다. Cathy Lang. Co-operative Governance. Effective Practices in Starting Co-ops : the voice of Canadian co-op development, edited by Joy Emmauel & Lyn Cayo. BCICS : New Rochdale Press, 2007. p. 463.

면 조직에서나 민주적인 거버넌스는 매우 복합적인 과업이다”로 시작한다.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는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을 포함하며, 협동조합을 통해서 민주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다. 끝이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기름진 토양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데 협동조합 모델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역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민주적인 규정, 거버넌스 규범, 절차와 과정(공식화된 조직, 사업 운영 모델)⁵이 필요하다. 또한 총회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통제 아래 견제와 균형, 민주적인 권리와 집행권의 분리도 필요하다.

민주적인 관여의 범위는 넓다. 몇 년마다 조합원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⁶가 있는가 하면, 중요 과제는 토론과 조율의 원리가 작동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상적인 활동은 조합원이 결정하고 기획·실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협동조합에는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색채가 농후하다.

제2원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1인 1표’라는 동등한 투표권이다. 이 원칙을 재정리했던 1995년만 하더라도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 자연인이며 조합원들은 동질성이 큰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1인 1표는 가장 명료한 동등한 투표권의 형태였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등 점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탄생하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과정(process)이라 한다면 절차(procedure)는 단계별 과정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6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행한다는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구한말 동아시아의 역사적 조건에서 ‘탁월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 논의하는 통치’로서 대의민주주의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는 흥미로운 논지도 있다. 이관후(2016).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면서 단위협동조합의 민주적인 투표 방식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제2원칙에서는 “다른 연합 차원의 협동조합들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는 구절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제2차, 제3차 조직 차원에서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해놓았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협동조합운동 자체가 민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협동조합운동이 제2차, 제3차 연합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2차, 제3차 협동조합 조직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한 규범을 제시하는 대신 “민주적인 방식으로”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투표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작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권리가 작은 것이 아니며, 그 역할과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17년 2월, 성남아이쿱생협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들 (출처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웹사이트)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일부 엘리트 집단이 민주적인 통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선출직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모든 조합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수준이 낮으면 목소리가 큰 일부 집단(직원, 중간 및 상급관리자, 선거인단)이 과도한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선거 자격 요건 및 규정이 이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 참여를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협동조합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협동조합과 투자자소유기업 사이의 핵심 변별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 다른 하나는 조합원이 곧 협동조합 기업의 수혜자(이용자)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실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협동조합 감사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선출직 조합원 대표들이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 또한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 협동조합의 큰 차이점이다. 타 기업 형태의 이해 충돌 정책과 절차⁷를 협동조합에 그대로 도입하여 이들 선출직 대표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동시에 이용자이고,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표들은 어떤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이해를 포함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출직 대표를 배제하는 의사결정이 협동조합을 탈조합화⁸로 이끈다. 선출된 조합원 대표는 본인의 이익이 조합원들의 불공정한 이익으로 귀결

7 개인이나 법인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에 있다고 전제하여 해당 개인이나 법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하는 각종 장치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김영란 법'의 목적으로 애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제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있어 조항에서 빠졌다.

8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특히 농식품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서구에서 나타났다.

되는 경우에만 이해충돌 규정에 기반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선출직 조합원 대표는 자신의 책임과 경영간부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조합원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경영간부의 일상적인 책임에 선출직 대표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영간부 및 최고경영자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영간부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이들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간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요 사업적인 결정에 관해 조언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제2원칙의 해설 지침에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다룬다.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구조 속에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직원의 협동조합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직원 스스로가 관여하는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헌신하는 태도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더 중요하게는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조합원, 타 이해관계자의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직원의 참여가 있을 때 협동조합 사업은 더 강해지고 더 회복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 직원, 법인 등이 참여할 경우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의결권에 가중치, 또는 의결권 비율을 정하는 것도 향후 고려할 점 중 하나다. 대규모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중층적이며 다양할 수 있다. 어떤 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진출한 경우 협동조합 법제도 환경의 차이로 인해 영리기업으로서 운영하기도 한다. 이때 제2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선출직 대표의 최장 임기 제한도 향후 검토해야 할 점이다. 이사회나 여러 위원회 등 조합원의 취임 임기는 몇 년까지로 제한해야 할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장 임기를 9년까지로 제한하기도 하고 ICA 이사의 경우에는 18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지침서는 ICA가 회원국 협동조합들과 협의하여 최장 임기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2원칙에서 강조하는 “조합원 참여를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장려”하기란 쉽지 않다. “사랑의 화살을 맞은 자만이 그 힘을 알 수 있다”는 고백(마하트마 간디)처럼 참여민주주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재생산되면서 널리 전파되고 단단해지고 더 커진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미숙한 갈등 해결 능력을 목격하기도 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열하고 상처와 반목을 겪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참여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냉담한 조합원과 대화하는 법(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회의 진행법(협동조합여성길드), 협동조합과의 출하 약속을 어긴 조합원에 대한 벌칙과 분쟁조정 규칙(덴마크 낙농협동조합) 등 실천지식⁹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며 역량과 규범을 높여왔다.

미국 식품협동조합연합Cooperative Grocer Network이 공표한 「극단적인 조합원 맞닥뜨리기」¹⁰ 역시 조합원 참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조직 운영을 건실하게 촉진하는 실천지식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냈다.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겪거나 겪을 법한 상황이어서 일부 소개를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을 취급해선 안 돼요. 그건 천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협동조합이죠.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운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매장도 의기소침해질 거예요.”

“그 결정은 참 논쟁적이네요, 조합원 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9 텍스트나 이론을 창의적으로 구성한 지식, 지식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학습된다.

10 David Fowle(1999). Encountering Cooperative Extremists.
<http://www.grocer.coop/articles/encountering-cooperative-extremists>

“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랑 다르죠. 마케팅이나 가격 할인, 매대 진열을 더 눈에 띄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랑 말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결국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니 이사회에 우리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시처럼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사회에 결정을 부정하는 조합원들을 맞닥뜨렸을 때 갈등을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식품협동조합에서 예를 든 ‘극단적인 조합원’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이며, 협동조합의 전략이나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을 협동조합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신조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협동조합의 목적,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묶어서 협동조합에 투영하여 행동하는 조합원들이다.

미국의 식품협동조합은 1960~1970년대 풀뿌리운동으로 탄생하여 각종 사회운동과 함께 성장해왔다. 친환경·유기, 지역 생산자, 공정무역 등의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지역 조합의 규모는 작다. 이사회에는 여성이 많고, 먼저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아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로서의 소양을 닦아나가는 방식이었다(한국의 생협과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조합 내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혼동과 미숙함을 겪는 것은 당연했다.

프로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에 관여하다가 이사로서 조합 운영의 책임을 맡은 경우, 이사회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일부 조합원의 극단적인 주장이 통하면 조합은 급속히 힘을 잃고 조합 내 개인을 공격하며 파괴적인 싸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식품협동조합들이 겪었던 경험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대처 규칙을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다.

그 첫 번째 규칙은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자”는 것이다.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쉽지만, 둘러싼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다는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합의를 형성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거나,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구조 자체를 탈취하려는 극단적인 행위를 밀어붙일 경우 이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이사들은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보고 싶은 부분만 협소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영역을 온전하게 full-spectrum” 바라보는 교육(제5원칙과도 연결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제창한 협동조합 정체성의 관점에서, 해당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복기해봐야 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협동조합의 논의 절차와 공개 방식에 대한 규약 등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의사록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체력 단련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역량 역시 단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협동조합 제3원칙까지 다룰 계획했지만, 이미 주어진 지면을 초과해버렸다. 아무래도 제3원칙은 다음 호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르포

정원각

라이프인 이사

환경과 빈곤을 함께
고민하는 벨기에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 La Bourrache*

라 브라슈는 사회적 미션과 환경적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또는 정원 정비 등을 훈련함으로써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일자리 이전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등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벨기에 사를루아 브뤼셀 공항

벨기에 브뤼셀을 가다

2016년 9월 14일, 스위스 남부에 있는 티치노^{Ticino} 주에서 기차를 타고 루가노^{Lugano}, 멘드리시오^{Mendrisio}를 지나 국경도시 키아소^{Chiasso}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타고 온 기차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직행이 있고 환승하는 기차가 있다. 하필이면 기차 하나가 결행하여 벨기에로 가는 비행기를 밀라노 베르가모 공항에서 아슬아슬하게 탈 수 있었다. 비행기표를 승객이 직접 프린트해야 하는 저가항공을 타면, 편도 두 시간 거리의 브뤼셀까지 왕복 항공료가 15만 원 정도다. 유럽의 남쪽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날아간 곳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ssels}. 브뤼셀에 있는 두 개의 공항 가운데 지난 3월 폭탄 테러를 피한 샤를루아 브뤼셀 공항에 첫발을 디뎠다. 브뤼셀은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였고 언어 또한 생소했다. 다시 물어 물어 시내로 이동하여 리에주^{Liege} 가는 기차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했다. 겁이 좀 없는 편이지만 이번 여행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입국장을 지나니 역시 검색대가 있고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행객과 짐을 검사하고 있었다. 유럽의 다른 공항과 복장만 다를 뿐 친절하고 편안했다. 공항, 버스, 기차역 등에서 보고 만난 브뤼셀 시민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온하고 차분해 보였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도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았다. 큰 사건을 당했으면서도 브뤼셀 시민들이 차분한 이유에 대해 리에주에 살면서 리에주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엄형식 씨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폭탄 테러는 2016년 3월 22일 오전 8시경,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공항 출

* 라이프인 정원각 이사가 지난 2016년 9월 벨기에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시내에서 경비를 하는 군인들

국장과 공항 내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는 브뤼셀 시내의 지하철 전동차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 이 세 번의 폭발로 테러리스트 2명을 포함하여 34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왜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벨기에에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엄형식 씨의 말이다. 유럽, 미국 등 서방이 과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한 죄,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각종 분쟁과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 경고와 보복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벨기에 역시 가해 국가 중 하나이고 그런 사실에

서 자유롭지 않다. 19세기 말에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가 콩고왕국을 지배하면서 많게는 1천만 명을 살해했고, 20세기 들어서는 르완다, 브룬디를 지배하면서 인종 갈등의 씨를 뿌려 그 유명한 르완다 내전과 학살이 발생했다. 엄형식 씨에 의하면, 벨기에 시민들은 이런 역사적 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 역시 테러에는 반대하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적 반성도 꽤 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들의 역사적 과오는 애써 눈을 감고 테러 피해만 강조하여 보복이 악순환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입장이 과연 테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처음 승인한 나라

세계적인 폭력과 집단적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벨기에는 어떤 나라일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벨기에는 서구 유럽 중에서도 이름 정도만 들어본 낯선 나라인 것 같다. 벨기에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구와 종교, 언어, 기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그런데 사실 벨기에는 한국과 인연이 꽤 있는 나라다. 벨기에는 1901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첫 번째로 우리 정부를 승인한 국가다. 더구나 한국전쟁에 UN군으로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하나다. 근래에는 축구선수 설기현이 선수 생활을 했으며 반대로 벨기에 출신 선수가 한국에서 축구를 한 적도 있다.

벨기에는 베네룩스 3국 가운데 하나로 왕이 있는 입헌군주국가다. 기후는 겨울이 길고 구름 낀 날이 많은 북부 유럽의 날씨와 비슷해서 엄형식 씨도 겨울에는 음습한 기후가 주는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타민을 먹는다고 한다. 전체 인구는 약 1,100만 명이며 언어는 플랑드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덜란드어(59%)와 왈룬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랑스어(40%) 그리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부터 할양 받은 지역에서 독일어(1%)를 사용한다. 학교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고, 그 외의 외국어로 프랑스어(왈룬 지역), 네덜란드어(플랑드르 지역)를 배운다. 벨기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끼어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1839년 독립 했다. 하지만 두 지역이 언어와 종교 등의 갈등으로 최근까지도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독립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벨기에의 사회적경제

벨기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벨기에를 방문한 목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벨기에 리에주대학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예가 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크 드푸르니 Jacques Defourny 교수가 있는데, 그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다녀가기도 했다. 드푸르니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벨기에와 유럽연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이윤 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정의를 반영하여 벨기에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와 유럽연합에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을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외에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9월 15일에는 브뤼셀에 있는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 La Bourrache’에 근무하는 위그 무상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어쩌면 무엇보다 중요한 물음인 일을 하는



라 브라슈가 있는 건물의 입구

당사자로서 행복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 장소가 사무실이었다. 손님과 식당이 아닌 사무실에서 샌드위치 정도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여기 벨기에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국 같으면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샌드위치를 대접하면 큰 실례라고 생각할텐데 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신선했다. 한국에 가면 꼭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영란 법을 가지고 경제 망한다고 징징거리는 농협 관계자들, 주류 언론 기자들, 대학 교수들, 고급 관료들, 그리고 어느새 감염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사회는 부조리, 부패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문화부터 바뀌야 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위그 무상

빈곤과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라 브라슈

먼저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는 어떤 단체일까? 라 브라슈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association로서 2.5ha(약 7,500평)의 친환경 농업 농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친환경 농사일을 가르치고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교육 훈련하고 직접 정원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활동을 위해 벨기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는 현장기반 훈련기업(EFT, Entreprise de Formation par le Travail)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교육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력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계층으로 현재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라 브라슈에서 일하는 실무자는 8명으로 농장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과 정원 관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각 2명, 사회복지사와 회계·사무 관리를 하는 실무자가 각 1명, 생산물 판매, 홍보 서비스 접수, 배치 등을 하는 실무자 2명 등이다. 그리고 정부가 배치한 2명의 인턴이 함께 일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기본 참여 기간은 6개월인데 평가를 바탕으로 두 차례 연장하여 총 18개월까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수입은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유지한다. 대학을 나왔거나 실직 기간이 짧아서 공식적으로 참여자로 인정 되지 않지만 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단체가 이를 원할 경우, 자체 수익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 브라슈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 조직의 특징은 사회적 미션과 환경적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것에 있다. 벨기에에는 사회적 미션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환경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마찬가지로 환경적 미션을 가진 조직이나 사람들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미션에 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라 브라슈는 이 두 가지 미션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낮은 학력의 취약 계층이나 장기 실직자들이 일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또는 정원을 정비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농사를 경험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먹을거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정크푸드를 먹은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일자리 이전에 자신의 생활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등의 문제를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이나 이사를 겸할 수 없는 실무책임자

2003년 처음으로 이런 두 가지 과제, 즉 건강한 먹을거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네 사람의 설립자들이 사업을 준비했다. 이후 유럽연합사회기금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 2005년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2016년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라 브라슈는 12~15명의 회원이 있는데, 별도의 회원 자격이나 출자금, 회비 등은 없다.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에 참석하고 오프닝데이(단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 정도가 주된 활동이다. 라 브라슈의 회원은 물질적인 후원이나 자원보다는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고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운동 참여자 또는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 총회에서 선출된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년에 6번 열린다.

벨기에의 일반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이사회나 총회에 일반 실무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실무책임자 정도만 들어간다. 라 브라슈의 경우에는 일반 실무자들이 참석하고 발언도 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아울러 실무자들은 회원이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초기에는 실무자들이 회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표이자 실무책임자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고를 할 수 없었다(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조언을 듣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후, 실무자들은 회원이나 이사를 겸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사회가 열릴 때 실무자들이 참석 할 수는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체 흐름은 알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단체들은 실무자들의 이사회 참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급은 실무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세전 2,100유로(약 270만 원, 1유로 1,300원 환산)에서 2,900유로(377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는 일반 직장의 60~70%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보통 시민·사회단체 실무

자 급여가 일반 직장의 5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조금 나은 현실이다.

라 브라슈에서 회계와 사무 행정을 하는 위그 무상은 아침에 출근할 때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하지만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거나 비가 올 때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 조직에서 맡은 일은 회계와 행정이지만 실무자의 수가 적다보니 아침에는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참여자들이 농장에 나갈 준비를 도와주는 일, 정원 정비에 대해 소비자들이 요청한 일, 사람들을 배정하는 일 등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월급은 적지만 가치 있는 일

30대 중반인 위그 무상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내와 함께 넷이서 살고 있다. 라 브라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 리에주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업을 듣고 매력을 느껴 이 길로 들어섰다.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잡은 직장이 라 브라슈다. 벨기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다. 금융권에 다니는 대학 친구를 10년 만에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직장에 다니냐고 묻기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다닌다고 했더니 “월급 받는 직장이 어디냐”고 다시 물어봤다는 것이다. 경영을 전공한 위그 무상이 라 브라슈에서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다. 그런 면에서 라 브라슈는 비록 월급은 적지만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일과 노동을 통해 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이와 같은 활동이 활동가 자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려면 라 브라슈를 거쳐 간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예들 들면 노동 통합 활동

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의 일자리를 얻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위그 무상의 답변은 “아직 우리 조직에서 참여자들의 사후 활동을 추적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에 취업하도록 권하고 있고, 얼마나 취업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압박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으로 라 브라슈도 단순히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는 사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크푸드가 싸지만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적으로 더 의미 있고 건강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에 보다 주목한다”는 것이다.

75%의 보조, 25%의 소득

라 브라슈는 2015년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약 25% 이고 나머지 75%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원으로부터 충당했다. 자체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7,500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과 정원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 앞으로 자체 사업 비중을 더 높일 생각이다. 그 방법은 농장을 더 확장하는 방식은 아니고 현재의 규모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판매 소득도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 조직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높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컨설팅도 받았다. 현재 업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정원 정비의 경우, 먼저 소비자로부터 정원 정비 요청이 오면 라 브라슈의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정원의 규모와 형태, 정비를 원하는 내용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적절한 견적을 작성하고 그것을

라 브라슈 2015년 수입 현황

구분		금액(유로)		비중(%)	
판매 수입	정원 관리 관련	75,144.83	25,400.00	24.8	(33.8)
	야채 바구니		30,256.22		(40.3)
	야채 기타		17,612.40		(23.4)
	기타		1,876.21		(2.5)
보조금*		222,247.60		73.4	
기타 수입		5,460.05		1.8	
전체		302,852.48		100.0	

* EFT 관련 교육훈련 제공에 대한 보조금으로 참여자 인건비는 미포함(실업수당으로 개별 지급)

소비자에게 보내 확인을 받은 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직원과 참여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소비자는 농산물 바구니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입한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는데 1주일에 약 100개의 바구니가 제공된다. 제철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바구니에 담아 소비자들과 약속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소비자들이 자기 것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농산물을 다 판매하지 못할 때는 지역의 유기농 매장과 아르덴 협동조합이라는 온라인 유통 판매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다. 이렇게 판매하고도 남은 것이 있을 때는 열린 장터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현재 라 브라슈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는 20명이다. 이 중 16명은 물론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EFT제도의 지원을 받고, 4명은 유럽연합이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라 브라슈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꽤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교육훈련생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조직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한다. 조직이 커지면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다. 한편 라 브라슈는 자신들처럼 사회적



브뤼셀에 있는 여러 단체가 함께 쓰는 건물

과제와 환경적 과제 모두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적·환경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리에주 지역의 와인 생산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리에주 와인 협동조합 Vin de Liège’은 라 브라슈를 모태로 하여 탄생한 협동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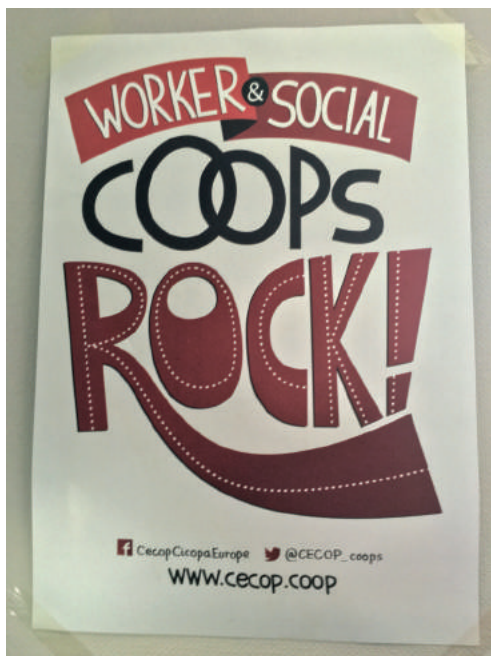
라 브라슈를 모태로 태어난 ‘리에주 와인 협동조합’

리에주 와인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2008년 라 브라슈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농장으로 빌린 농지에 채소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던 중에 오래전에 그 농지가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채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포도를 심어 와인을 생산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시민 중에 리에주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초기 출자를 통해 설립한 이후 5년이 지나야 포도가 생산되고, 손익 분기점을 넘으려면 다시 5~6년이 걸리는 등 안정되기까지 전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 작년부터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리에주 와인 협동조합은 라 브라슈 실무자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의 씨앗으로 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브라슈 실무자가 시작했다고 해서 자기 사업으로 직접 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리에주 와인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라 브라슈에 참여하는 회원과 실무자들도 힘을 보탰다.

위그 무상은 “라 브라슈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월급을 주는 직장은 아니다. 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 직장으로 라 브라슈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경제적인 보상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경제적 보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이상, 가치도 중요하다. 라 브라슈에서 일하면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은 편이고 직원들 간에 배려와 협조도 원활하다. 예를 들어 주말 장터와 같은 일이 있어 휴일 근무를 하면 대체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쉬는데, 동료들은 대체 근무를 위해 협력한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협조가 잘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한다.

라 브라슈에 근무하는 위그 무상과의 인터뷰는 오늘날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빈곤과 환경 문제는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부딪히는 문제다. 환경단체, 생협,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노동, 도시빈민 등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빈곤 문제



브루노 사무총장 (위)
노동자협동조합 안내 포스터 (아래)

에 관심이 많다. 한때는 이런 문제가 갈등이 되기도 했다. 벨기에도 빈곤과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들은 드물다고 한다. 이제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성장도, 침체도 쉽지 않은 협동조합

9월 16일 오전에는 리에주대학 캠퍼스와 연구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다시 브뤼셀로 가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실을 찾았다. ICA 사무실은 몇 년 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지만 임대료와 유지비 등의 부담 때문에 찰스 굴드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브뤼셀로 옮겨왔다. 방문한 ICA 사무실은 매우 단출했다. 상근하는 직원도 불과 3~4명. 그중 한 사람이 한국 농협에서 파견한 주홍철 씨다. 주홍철 씨와 통역을 담당한 엄형식, 그렇게 셋이서 점심을 먹고 국제노동자협동조합^{CICOPA} 브루노^{Bruno Roelants} 사무총장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는 자본 기업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어렵다. 그것은 협동조합도 자본주의시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 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채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에 일반 은행에서 협동조합에 대출을 잘 해주지 않은 덕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이 비분할자산 등 내부 적립(유보)이 자본 기업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자본 기업에 비해 위기 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기업만큼 급격한 성장도 쉽지 않지만 급격하게 침체를 겪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협동조합 업종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 전반적으로 건축, 건설은 자국 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다. 잘 알려진 이탈리아 건설 분야 협동조합 컨소시엄인 CCC는 이탈리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주요 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리에주의 운하

CMC라는 건설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협동조합 중에서 (규모가 작아서) 친밀한 관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위기 시 서로 돕고 협력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유리하지만, 건축, 교통 분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관계의 밀도는 소규모 협동조합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규모로 인해 교통 분담을 완충할 여지가 많다. 경기 침체와 위기는 초기에는 급격하게 온다. 협동조합은 초기 국면에서 상당한 저항력을 보이지만, 침체가 오래 고질적으로 지속되면 어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망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9월 17일에는 기차를 타고 엄형식 씨가 추천한 브리주Bruges로 향했다. 벨기에에 머물기로 한 4박 5일 기간 중 관광을 위한 날이었다. 브리주는 중세부터 구성된 오래된 도시여서 그런지 도시 공원에 굽적굽직한 나무들이 파란 잔디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도시 가운데 운하가 흘러 북의 베네치아라는 명칭과 함께 배가 운송 수단 그리고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었다. 마침 주말이어서 브리주는 활기찼다. 시내 중심에 있는 벨포드탑과 마켓광장에는 노인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가 연주를 하고 관광 여인이 흥에 겨워 춤을 추었다. 도시 어디에도 테리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날 브뤼셀에서 마지막 밤을 묵었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 마침 숙소는 도심이었고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서방에서는 위협하다고 날마다 떠들어대는 무슬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거의 하지 않는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주로 한다. 술만 먹으면 폭력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표출된 폭력성 때문에 구속이 되고, 법정에서 ‘술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형량을 대폭 깎아주는 한국과 비교하면 이곳은 너무 평화롭기만 했다. 다음 날 숙소에서 나와 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근처에 일요일에만 서는 장이 열렸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1만 평이 넘는 장소에서 열리는



마켓광장에서 연주하는 브라스밴드와 관광객



주말 장터

이런 장 역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숨구멍일 것이다.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테러를 당했지만 다시 평화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온 벨기에 국민들과 브뤼셀 시민들 그리고 군용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는 브뤼셀 시내 한 지하철 광장에 폴 헨리 스파크 Paul Henri Spaak의 흉상이 함께 보였다. 벨기에 총리를 지낸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벨기에 정치를 주도했고 유럽 통합을 선도했다. 이어 1945년 국제연합^{UN} 헌장을 기초했고 다음해에 개최된 UN 총회에서 초대위원장을 지낸 위대한 정치인이다. 테러는 유럽 통합에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그 테러가 스파크가 꿈꿨던 유럽통합을 좌절시키지는 못 할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먼저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꿈꿨던 스파크의 꿈이 벨기에 국민, 유럽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폴 헨리 스파크 흉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모두의 은행’

— 키다리은행

김은남 시사IN 기자



키다리은행. 명칭은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따왔다.



선, 후배님들께 가난을 호소합니다.

가치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조선', '지옥불만도' 등의 표현은 그 과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할당할 사실은, 앞으로 우리 세대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실장하고 있지만, 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발을 디뎠습니다. 국가의 지원 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냈으며,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배후 단단한 돌리킬 굴이 깊습니다. 정치는 호신은 재산을 향해, 재산은 상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의 장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선, 후배님들은 어디로 향하고 가실까요?

이진 술 - 차오르는 현실에서, 저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심시일발'이라는 활동에 닿았습니다. 대학설과 사회의 관계가 학생이 사회로부터 휘둘리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에 맞닿습니다. 결국은 공동체이며, 우리를 중 누군가는 이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에 맞닿습니다.

이제 저는 시야를 이곳에 두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돈 몇 톨에 자존심을 팔아넘기며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가난한 현실을 말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규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이 자신의 소중한 실(性)을 팔러 다니는 현실과, 가난한 대학생의 가족한 현실이 대부입제여서는 곤 기회가 되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회의 방어막이, 공동체의 방어막이, 머뭇거리고 있어 함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음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팬스를 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러나 때로는 카다리에게까지 우리를 지켜줄 우리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카다리은행'은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될 은행이자, 자발적인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이 힘든 한양대학교 학생 누구나가 가져다 쓸 수 있으며, 명심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다시 가져다 쓰며 살을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저는 빚빚한 선배로 남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누군가의 비웃음을 살지라도, 그 비웃음으로 10년 뒤 한양대학교에 입학할 가난한 후배의 웃음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5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르고 민주적인 시작을 만들기 위해 50명 이상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당신의 지원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공고히 해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010-9204-1163.

**이 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댈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난을 호소합니다.**

발기인 이강원 이호영 노수영 박태민 송재성

2015년 가을 한양대 교정에 나붙은 대자보. 카다리은행이 결성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마 그 전 같았다면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나’ 싶어
고민하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키다리은행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건은 한 장의 대자보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 10월, 한양대학교 구내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었다. ‘선, 후배님
들께 가난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한 장의 대자보는 ‘헬조선’,
‘지옥불반도’로 전락해버린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으
로 오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대학 또한 희망이 보
이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 하고, 누군
가는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아넘겨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생이 처한
현실이었다.

저는 직설적으로 규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학생이 자신의 소중한 성
(性)을 팔러 다니는 현실과, 가난한 대학생의 가혹한 현실이 대부업체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회
의 방어막이, 공동체의 방어막이,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
음을 규탄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대자
보의 핵심 주장이었다. 비루한 현실로부터 대학생을 보호할 방어막이 필
요하며,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면 대학 공동체가 스스로 방

어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자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안이 공동체 은행의 설립이었다.

여기 우리의 펜스를 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러나 때로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를 지켜줄 우리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키다리은행’은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될 은행이자 자발적인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이 힘든 한양대학교 학생 누구나가 가져다 쓸 수 있으며, 양심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가져다놓으며 살을 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후배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키다리은행은 이렇게 시작된 대학생들의 금융협동조합이다. 본래는 한양대에서 ‘협동조합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을 함께 들던 학생 5명이 의기투합해 출범시켰다. 대학생들이 가난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들은 위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학내 자치은행을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말 그대로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이타적 금융’을 만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은행 이름은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모티브를 따 ‘키다리은행’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 뒤 ‘키다리은행 발기인’ 명의로 문제의 대자보를 써 붙이게 된 것이다.

‘가난을 호소합니다’ 대자보에서 시작

대자보의 위력은 강력했다. 순식간에 30여 명이 모였다. 출자금 또한 240만 원 가까이 쌓였다. 가입 시 1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학생 조합원 외에 대학 선배나 교수 등 이들의 뜻에 공감한 명예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보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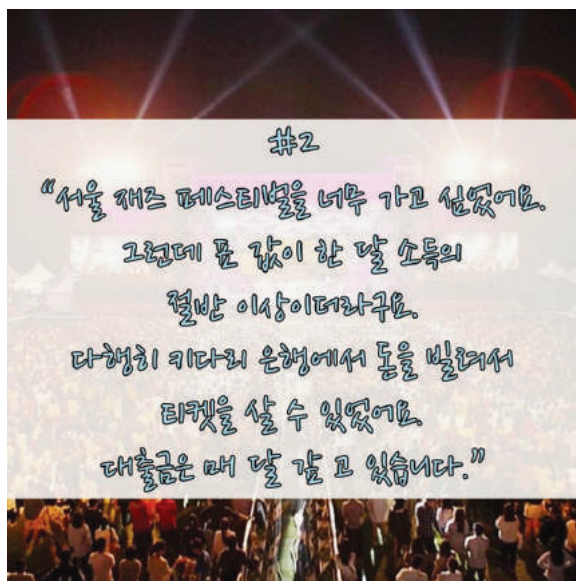
훗날 키다리은행 초대이사장을 맡게 된 한하원(2015년 당시 국제학부 3학

년) 씨 또한 이 무렵 협동조합에 합류했다. 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집안의 경제적 지원 없이 대학생활을 해왔다. 다행히 ‘알바’ 운이 좋았던지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가끔씩 현금 흐름이 막혀 곤란할 때가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일을 못 한다거나 알바비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입금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럴 때마다 한 씨는 유혹에 빠졌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자니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게 싫었다. 반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업체 광고는 사방에 널려 있었다. ‘다음 주면 알바비가 확실하게 입금될 텐데 그때까지만 저런 데서 돈을 한번 빌려봐?’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대부업체에서 함부로 돈을 빌렸다가는 거래 기록이 남아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등 살벌한 경고를 주변에서 술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마음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치은행이 생긴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터였다. 한 씨 같은 마음으로 십시일반 찜짓돈을 모아 기다리

대출을 원하는 조합원은 대출사유와 상환계획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 창립총회를 연 이들은 맨 먼저 ‘쏏다리펀드’라는 소액 신용대출 업무를 시작했다. 키다리은행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최대 30만 원(단체는 최대 50만 원)까지 6개월 기한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는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추는 단계다. 키다리은행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교육을 이수해야 대출 신청 자격이 생긴다. 2단계는 대출금 사용 계획과 상환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다.

3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키다리은행 심사팀에 속한 ‘펀드매니저’가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만나 상환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대출과 상환을 담당하는 조합원을 키다리은행에서는 펀드매니저라 부른다). 심사를 통과하면 면접 당일 대출금이 조합원 통장으로 입금된다.

4단계는 이렇게 빌린 돈을 갚는 단계다.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대 6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형편껏 ‘자율이자’를 매겨 돈을 갚는 방식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 최종 상환일은 지켜야 한다. 갑자기 일자리에서 잘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미리 제출했던 상환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최종 상환일 한 달 전까지 상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키다리은행의 독특한 특징이라면 이럴 때 조합원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상환 지원사업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한다가거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문서를 번역하는 일자리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북서울신탁, 학교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소개받는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원의 연체 위험부담을 덜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이 1호 대출자가 된 사연

이렇게 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출체계를 정비했지만, 초반에는 정작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키다리은행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였다. 키다리은행을 사업체가 아닌 결사체로 보는 시선도 문제가 됐다. 사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만든 자치금융이 키다리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출범한 ‘청년연대은행 토닥’ 또한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이다. 청년들의 금융협동과 생활협동을 추구한다.

그런데 청년연대은행 토닥도 처음에는 조합 활동이 잘 굴러가지 않아 뼈저려진 일이 있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좋은 일 한다는데 후원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조합에 가입했다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시민단체 후원하듯 출자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김진희 전 토닥 이사장은 말했다. 이에 토닥은 운영진부터 적극 나서는 방식으로 소액대출 업무를 활성화했다. 조합원들이 손님인 양 머물러 있어서야 협동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키다리은행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5년 말 초대이사장을 맡게 된 한하원 씨는 스스로 제1호 대출자가 됐다. 이사장이 맨 먼저 돈을 빌린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으나, 금융협동조합의 주요 핵심 사업인 소액대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운영진부터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하원 이사장이 1호 대출자가 된 데는 절실한 개인적 사정도 있었다. 당시 한 씨는 한 달간 해외연수 기회를 잡고 이에 필요한 비행기 값과 체류비 등을 착실히 모아놓은 상태였다. 문제는 그 사이 비워둘 자취집에 잠시 입주하기로 했던 친구에게 사정이 생긴 것. 그 바람에 한 달 치 월세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아마 그 전 같았다면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나’ 싶어 고민하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키다리은행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한 씨

는 말했다.

기회의 포기. 키다리은행이 판단하기에 이는 대학생들의 가난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였다. 돈 없는 대학생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외부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거나(학자금 대출도 물론 그중 하나였다), 아니면 돈 쓰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으로서의 현재를 포기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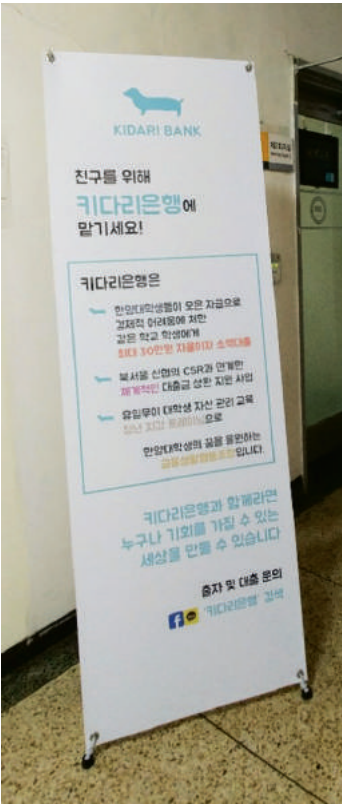
한하원 씨처럼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는 일만이 아니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기회 또한 포기해야 했다.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의 식비나 문화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양대생 A씨는 이런 이유로 동아리 뒤풀이에 참여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돈이 없어 이렇게 자기만의 방에 틀어박혀 지낸 대학생들은 정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사람이 없게 된다. 빈곤이 인간을 고립시키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다시 빈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초 키다리은행이 작성해 학내에 붙인 두 번째 대자보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더 선명하게 담겼다.

많은 짐을 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가 기댈 곳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도 대학생의 은행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바깥에 기대는 것은 더 큰 짐이 되고 맙니다. (중략) 한양인 중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키다리은행은 그런 상황이 생겼음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소중한 자금으로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한양대’라는 이름 안에서는 ‘돈’ 문제로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한양대가 안전한 울타리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그로부터 1년여, 키다리은행은 꾸준히 성장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키다리는행은 대학생들을 위한 '문턱 없는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17년 5월 말 현재 120여 명으로 늘었다. 출자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간 대출 건수는 총 70여 건, 누적 대출금은 1,800여만 원에 이른다. 시험공부를 위한 학원비, 휴대전화 깨진 액정 수리비, 여자친구 생일을 위한 선물 구입비 등등 대출 사연은 다양하다. 대출 심사에서 이들 사연을 중요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키다리는행 측은 밝혔다. 그보다는 상환 계획의 적실성을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간 조합원들이 자율로 납부한 이자총액은 2016년 말 기준 179,000원 가량이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쥐꼬리만 한 액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견힌 이자의 2/3는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배당됐다. 올 초 한하원 씨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2기 이사장을 맡게 된 김동환(경제학부 2년) 씨는 “그래도 은행 정기적금 금리보다는 높은 이자를 조합원들이 배당받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은행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협동조합형 금융 방식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키다리는행 자율이자의 평균 1일 수익률은 2.79%에 이른다.

그사이 재무교육도 본격화했다.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금관리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키다리는행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대학생 맞

층형 재무교육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다.

2017년 1학기에는 (주)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같이가치’와 함께 ‘꿈 키높이 통장’ 프로젝트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자기 꿈을 밝힌 뒤 저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약속대로 실천하면 같이가치가 매달 불입액의 18~30%를 응원금으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원 김충만(경제금융과 4년) 씨는 이 프로젝트에 지원해 지난 2월부터 매달 5만 원씩 15만 원을 불입한 상태다. 이렇게 여섯 달 동안 계획한 30만 원을 채워 부산 여행을 가는 것이 애초 목표였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그에게 여행 계획은 사치였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지만 정작 국내 여행은 거의 다녀본 일이 없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부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에게 꿈 키높이 통장은 새롭게 주어진 기회였다. 지난 연휴 때 그는 꿈을 이뤘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2박 3일간 부산 해운대며 태종대를 돌고 온 것이다. “그 전에는 수중에 돈이 있으면 그냥 쓰고 보는 식이었다. 그러나 꿈 키높이 통장을 만들고부터는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통장 만기가 되면 이자(응원금)까지 합쳐 35만 원가량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어머니한테 돈을 갚을 예정이다”라고 김충만 씨는 말했다.

단국대 등에도 키다리은행 모델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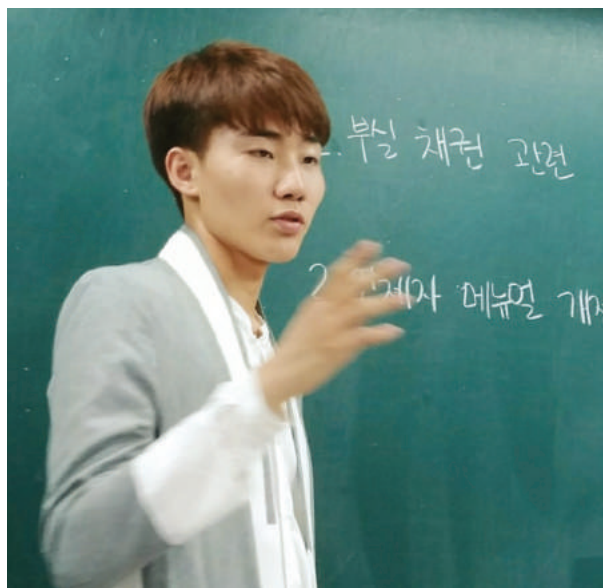
키다리은행은 캠퍼스에 기반한 대학생 자치형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처럼 세대에 기반했으며, 대학 공동체라는 더 끈끈한 모집단으로 묶여 있어 특정한 공간과 문화,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키다리은행의 강점이다. 시중 은행처럼 ‘신용’을 담보로 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담보로 삼는 게 금융협동조합의 특성

인 만큼 이 같은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동문이나 교수들도 명예조합원으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키다리은행 모델을 이식하고 싶다는 대학 또한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2016년 9월에는 한양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서울시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들이 차례로 키다리은행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를테면 키다리은행 서울시립대 지점과 단국대 지점이 생긴 셈이다. 서울시립대는 학생회가 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사회적경제 수업을 진행하던 지도교수가 적극 개입했다. 김동환 이사장은 이들 학교에 키다리은행 운영진을 파견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들이 겪은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체자 처리 문제는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시행착오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한양대의 한 강의실에서 개최된 키다리은행 열린이사회에서도 연체자 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키다리은행은 일반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이사회를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고 있다). 조합이 대출 활동을 개시한 지 1년여 만에 누적 연체 건수가 6건. 이에 따른 연체액이 145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에는 갑작스런 돌발 상황으로 돈을 갚기 어려워진 조합원도 있다. 이럴 경우 조합은 수정한 상환 계획을 받고 돈 갚는 기한을 연장해준다. 문제는 수정한 상환계획조차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버린 조합원들이다. 펀드매니저와의 통화 시에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정작 주변 지인 전언이나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아무 문제없이 신나게 즐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조합원도 있다.

이런 암채 조합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날 저녁 열린이사회에 모인 조합원 20여 명은 이 문제를 놓고 두어 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연체자에게 연체 기간별로 차등화 된 벌금을 부과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연체자의 실명을 단체 카톡방 내에 공개하자는 제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키다리은행 초창기만 해도 연체자 실



김동환 이사장이 열린이사회에
오른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명을 단톡방 내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하원 1기 이사장은 말했다.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대학 공동체 특성상 이 정도 조치만으로도 연체자에게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SNS 내 연체자 실명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변호사 일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열린이사회에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먼저 잘못된 쪽은 연체자인 만큼 일단 실명을 공개하고, 그쪽에서 문제를 삼겠다면 법정에서 다투보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표결까지 갔던 이들의 논쟁은 일단 장기 연체자에 대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단톡방에 실명을 밝히지는 않되,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전체에 공개함으로써 연체자를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도 상환 노력



열린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연체자 처리 안건을 놓고 표결 중이다.

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자 통장을 가압류하는 한편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연체자 처리 문제

연체자 처리 문제와 더불어 키다리은행을 괴롭혀온 양대 난제는 키다리은행 전용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문제다. 운영진과 조합원들이 1년 넘게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 외부 공모전을 통해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버그 수정, 기능 추가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김동환 이사장은 앱을 완성시킴으로써 조합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현재 키다리은행 조합원은 출자금에 비례해 KEY라는 단위의 가상화폐를 지급받고 있다. 조합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가상 신용도 쌓인다. 그런데 앱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조합 내 신용(가상화폐+가상신용)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누군가 대출을 필요로 할 때 조합원들이 각자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지 말지 판단해 자신이 쌓아온 신용을 앱 내에서 간단하게 모아줄 수 있다. 이로써 대출 과정에 조합원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합원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계속 길을 찾아나가는 것. 키다리은행이 생존하기 위해 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키다리은행은 임의단체에 불과할 뿐 정식 협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생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특성상 입학·졸업·휴학 등에 따라 운영진과 조합원도 짧은 주기로 바뀐다. 그런 만큼 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상시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합이 존립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다 보니 연체자 처리 같은 문제도 조합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푸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말이 그렇지 사실 대학생들이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금전적 부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이런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작동 방식을 배워가고 있다고 김동환 이사장은 말했다.

키다리은행 설립 계기가 된 최초의 대자보에서 이들은 ‘이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댈 곳은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 절박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자양분이었던 셈이다.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로 한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키다리은행 모델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대학생과 사회의 관계가 학생이 사회로부터 휘둘리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전환기 시대, 창업과 배움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시니어 스타트업

김현하

아이콜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취로, 공공근로 단계 이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것은 시니어를 소비자로 볼 뿐 경제활동 인구로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 떠오르는 소비시장’, ‘실버세대 소비 트렌드’와 같은 말은 넘쳐나지만 시니어를 일자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데는 아직 인색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에 따르면 3년 이상 존속한 창업비율이 50대 이하는 28%지만 50세 이상은 70%에 이를 정도로 시니어 세대의 창업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축적한 경험과 연륜, 기술이 창업 단계에서 빛을 발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진입하는 창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것은 고사하고, ‘시니어의 아이디어는 지루하다’는 이미지부터 창업자는 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편견도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편견에도 은퇴 후 협동조합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창업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 소개해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창업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든 47억 원이 배정된 반면, 청년 창업지원에는 10배 이상 많은 672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세대도 다른 어떤 시기보다 어렵지만 시니어 세대 또한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창업으로 돌파하려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유한 역량과 보유하지 못한 역량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무조건 역량을 높여야 창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다만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 ‘기대하는 수준의 성공’과 우리의 역량이 일치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명이 반찬가게 협동조합을 준비한다면 호텔 주방장 5명이 조합원으로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호텔 주방장이 있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었는데 조합원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요구 역량이 과도하면 동참하려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보유한 역량과 기술 수준에서 사업 목표를 정하고, 큰 시장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수준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본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창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노력과 재능으로 도저히 보완되지 않는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역량 있는 ‘어린 선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학력도 높고 기술 수준도 높다고 하지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변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신선한 안목, 빠른 학습이 상대적으로 강점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젊은 세대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조합 내부의 역량만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세상을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갖고 주변의 어린 선생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선생에게 배우는 시니어 협동조합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은 주로 40~60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인 곳으로 현재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홍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마케팅을 학습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그때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서울대 동아리 학생들에게 도움

을 구해 젊은 안목과 기술을 수혈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불법 안마와 혼동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해당 업종의 소비자들은 방문 전에 꼼꼼히 온라인 검색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됐고 조합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활동이 성과로 이어져 실제 고객 비율이 여성과 20~30대층으로 확장되어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블루베리 열매를 판매하는 ‘산울베리사회적협동조합’은 경증 이상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블루베리 판매 협동조합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다보니 적자가 누적되고 뚝족한 해결책도 없어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도움에 나선 대학생들이 블루베리에 대해 조사해보니 열매만 따고 버렸던 블루베리 잎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잎만 따로 차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과 서울대학교 인엑터스 동아리 ©참손길협동조합

이 두 사례의 협동조합은 시니어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역량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젊은 세대가 기회를 발견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준 사례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냉정할 정도로 솔직하게 바라보면,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수용이 협동조합에서 주인으로 살아볼 수 있는 체험을 준다는 점은 아이러니입니다. 흔히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선 사례처럼 협동조합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움과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회창업 vs 비전창업, 중요한 건 소비자의 필요

시니어 협동조합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면서 자신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사회화하고 은퇴 후 보람을 더 얻고 싶은 경우입니다. 전자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 안정적인 소득과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회창업’이라면, 후자는 구성원의 비전 실현과 가치 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창업’입니다. 비전창업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득보다 적절한 일자리, 사회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경험 전수 등 지식 기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기회창업과 비전창업 모두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전창업은 이 과정이 창업 단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창업의 동기가 고객의 필요보다 개인의 비전 실현에서 발생하기 때문 이죠. 창업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재능기부나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 사업체로서 자생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사업에서 비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삼성전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그린발전소’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의 나이가 예순 둘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에너지소비 절감이라는 비전으로 창업의 사다리에 올라탔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공공기관의 로고를 붙일 수 있는 절전형 멀티탭입니다. 절전 멀티탭에 로고를 넣는 기능만 추가했을 뿐이니 높은 기술력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본금도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구매자에게 로고가 붙은 멀티탭을 제안했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기만 하고 잘 쓰지 않는 기념품보다 활용도가 높으니 기념품으로 구매해 나눠줄 만한 상품입니다. 이 아이디어로 2013년 공공시장 비즈니스 모델 창안대회에 입상해 현재 50개 지자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단계 발전해 천장형 에어컨의 냉기를 싫어하는 여성들을 위해 실링팬 형태의 에코팬



절전형 멀티탭과 에코팬 © 사회적기업 그린발전소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에어컨의 냉기로 온도 높이기엔 바쁜 여성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설치만으로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가면서 실현시키는 사례는 비전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협동조합에게 참고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시니어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며

대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퇴임한 시니어는 특히 회계, 마케팅, 인사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 멘토링 사업에 멘토로 참여해 창업 과정을 간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일반 벤처로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20~30년간 전문 분야에 종사한 시니어의 경험을 전수해주면 창업의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지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과정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스스로 창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이쿱생협도 올해부터 활동가들의 협동조합 창업 과정과 청년협동조합 창업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청년창업가에게 전수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을 간접체험하며 상호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원이 많지 않은 협동조합이 경험을 지렛대 삼아 다른 세대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면 무거운 물건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창업비용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준비한 연금까지 소진하면서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와 창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50플러스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에 입주하여 줄일 수 있고, 광고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모바일과 홈페이지는 필수입니다.

2015년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에 따르면 구매 고려 단계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 소비자를 찾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효과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가져온 편견 때문에 내린 선택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바뀌고 있는데 기업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지름길입니다.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도 과거와 달리 저렴하게 가능하고, 주변에 도와줄 젊은 세대가 있다면 별다른 예산 없이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외에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도 새로운 풍경입니다. 최근 CNN에 소개된 89세의 한 할머니는 지팡이 공예사업을 위해 킥스타터(Kickstarter)¹에서 창업자금 3,500달러를 모아 사업을 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출자금을 나눠 위험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청년과 달리 한 번의 실패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사용할 연금, 최소한의 생계비 등은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1 2009년 시작된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 전부터 투자자, 소비자들을 참여시켜 시드머니(seed money)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한국. 이중 가장 장수하게 될 나라는 어디 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2017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조사 대상국 중 기대수명이 90살을 넘긴 집단은 한국 여성이 유일하고, 한국 남성도 다른 나라의 남성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한 인구 집단의 기대수명이 90살을 넘긴 최초의 결과라는 설명도 눈길을 끄니다. 그럼 한국에서 노후의 삶은 어떨까요?

OECD는 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² 70%를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은퇴하기엔 건강하고 연금으로 살기엔 부족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일터를 잃어버린 세대는 일상의 더 많은 시간을 불안에 할애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에서 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전환기 시대에 창업과 배움으로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니어 세대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시니어 세대의 발걸음이 갈 곳을 잃은 많은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정해진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명목상'으로는 약 120만 원이 된다는 것과 같다.

서평

“꽃 하나 쌀 한 톨, 꽃 한 다발 밥 한 그릇”

『밥꽃 마중 : 사람을 살리는 곡식꽃 채소꽃』

장영란, 김광화

들녘, 2017

엄지영

아이쿵 기자



딸아이는 작은 몸 어디에서 젓 먹는 힘이 나오는지 세차게도 빨아댔다. 첫돌 지나고 두 돌을 훌쩍 넘기고도 젓만 빨아대니 돌아난 이에 젓꼭지가 찢어지고 허물어졌다. 날마다 힘차게 젓을 빨아대던 딸은 젓을 떼자마자 가장 먼저 밥을 먹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밥상에서 생이 피어난다. 뜨거운 연애와 아슬아슬한 애정행각을 통해 꽃을 피운 결과물이 우리네를 먹여 살리고 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들어 오는 대변화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벼 한 포기, 벼이삭 한 톨을 볼 기회가 있을까? 계절을 돌며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암술과 수술의 꽃

가루가 만나 땀방울의 결실인 열매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

쌀 한 톨, 콩 한 알, 배추 한 포기… 모두 사랑 없인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꽃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다.

“‘꽃’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가슴속이 아들아들해진다. (…) 그래서인지 꽃에 얽힌 이야기도 많고, 기쁨이나 아픔을 나눌 때면 꽃을 주곤 한다. (…)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꽃들을 뭐라 불러야 잘 어울릴까? (…) 밥상에 올라, 사람을 먹여 살리니 ‘밥꽃’이라고, 가만히 그 이름을 불러본다. ‘밥꽃.’”(5쪽)

쌀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먹는 밥도 농부의 노동과 밥꽃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벼꽃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 작은 벼꽃 한 송이가 제대로 피어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떨어뜨려야 쌀 한 톨이 나온다. 날씨가 나쁘거나, 영양상태가 안 좋거나, 벌레가 못살게 굴면 허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에는 벼꽃 한 송이의 드라마가 담겨 있다. 밥 한 그릇은 꽃 한 다발의 사랑이다.”(6~7쪽)

사람이나 식물이나 치열한 자연환경에서 꽃꽂이 살아남아 종을 이어간다. 틈새 전략도 펼쳐야 하고 자연의 빈틈을 살려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나간다. 도시를 떠나 무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자 장영란, 김광하 두 사람의 밥꽃 이야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지 먹어치움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느끼게 한다. 꽃이 피는 순간 생명의 절정기, 암수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밥꽃 마중』은 부별로 곡식꽃, 채소꽃, 한 글자 우리말 나무꽃과 들꽃으로 단락단락 정갈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 안에 다시 벼과 집안, 마디풀과 집안, 콩과 집안, 파 집안, 박과 집안 등으로 나누어 놓고 기르고 느낀 경험을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통해 생명 꽃을 피우는 농작물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 뿌리를 더듬어 먹거리가 되기까지의 역사와 변화가 정성

스럼게 담겨 있다.

특별히 인상적이고 재미있던 부분을 소개해보는다면 우선, 곡식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추, 담배, 호박은 우리 민족과 떼기 어려울 만큼 어우러져 꽤 오래된 작물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하니 신기했다. 수박은 저 멀고도 먼 남아프리카가 원산인데 고려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도 재미있다. 옥수수는 아메리카에서, 수수는 아프리카에서 들어왔단다.”(423쪽)

그리고 된장국 한 사발이 되는 아욱꽃이 눈보라 속에서 꽃을 피운 이야기는 한편 장엄하고 숭고하기까지 하다.

“오이, 호박 같은 작물은 서리가 내리면 동작 그만! 잎이 끓는 물에 데쳐낸 듯, 시들어버리니 꽃을 본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렇게 된서리는 웬만한 식물들한테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 그런데 아욱은 된서리를 맞고도 꽃을 피운다.”(209쪽) “이래저래 아욱은 매력 덩어리다. 아,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된서리 이겨낸 아욱된장국을 한번 먹어야겠다.”(212쪽) “속담에 ‘가을 아욱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먹는다’더니 아욱은 가을에도 새잎을 낸다.”(214쪽)

“우리 민족의 밥상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등 채소”, 배추 이야기도 들어보자. 김치가 되고, 쌈 채소가 되고, 달달한 국이 되는 배추꽃은 얼핏 유채꽃과 비슷하다.

“노란 배추꽃은 맛도 좋다. 배추꽃이 피는 4월 중순, 곡우 무렵에는 아직 텃밭채소가 귀할 때다. 아직 어린 상추 몇 잎 따면서 배추꽃도 한 움큼 만다. 배추꽃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약간 매운맛이 난다. 또 아삭하니 씹히는 식감이 좋다.”(218쪽)

「참깨꽃: 벌들의 황홀경」이라는 제목이 붙은 밥상의 보물 참깨 이야기도 인용해본다.

“열러라, 참깨!’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 나오는 주문이다. 보물을 감추어둔 굴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말. 주문치고는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248쪽) “꿀벌들이 외친다. ‘피어라, 참깨!’ (….) 참깨꽃 한 송이가 지고 나면 꼬투리 하나가 영근다. 그런데 이 꼬투리 속에는 60알 남짓 씨앗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참깨는 많은 자식을 남기는 셈이다. 그야말로 황홀한 사랑이다. 우리 속담에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있다. 참깨를 털어보면 이 말을 실감한다. 고소하면서도 하얀 깨가 꼬투리 속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니 말이다.”(251쪽)

지난해 1년간의 텃밭농사 경험을 하면서 열매를 따는 재미가 쏠쏠했다. 허나 꽃 향을 맡아볼 생각을 못 해봤고, 눈여겨 한번 쳐다보는 일에 진심 소홀했다. 『밥꽃 마중』은 이런 소홀함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생명꽃이 목숨줄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게 한다.

자연의 생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과 다르다. 농촌에서 농사를 대하는 일이, 밥을 먹을 때 밥상을 대하는 일이, 쌀 한 톨이 계절을 이고 지고 견디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고, 함께 살아야 할 일이다. 『밥꽃 마중』은 꽃바람을 피워 사랑과 소중함에 대한 까닭을, 깊이 남겨주었다.

정부 인식 변화, 협동조합을 성장시킨다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ICA-AP 협동조합 각료회의 개최

●●●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ICA-AP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 협동조합 각료회의(APCMC)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협동조합 각료회의는 4년마다 협동조합 정부 관계자, 협동조합 대표, 국제기구 등이 모여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25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SDGs를 지지하고 ICA의 www.coopsfor2030.coop 플랫폼에서 결과를 공유할 것을 결의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돌봄과 사회적경제에 대해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간 연계를 증진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조화로운 협동조합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SDGs를 중심으로 한 이번 회의의 주제는 “2030년을 위한 비전 수립 :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와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촉진”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식량 주권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역할, 새로운 협동조

합 접근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규제 및 입법 환경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관들과 협동조합들은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성 평등, 일자리 창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소비생활협동조합업무실 야마모토 토오루 실장은 일본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서로돕기 문화를 되살리는 데 생협이 공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각료회의 전체 발표자료

<http://www.ica-ap.coop/icaevents/10th-asia-pacific-ministers-conference>

각료회의 결의문

<http://www.ica-ap.coop/icanews/hanoi-declaration>

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정부 법안 마련

●●● 올해 예산안 관련 연설에서 필립 해먼드 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이 소규모 협동조합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매출 기준을 560만 파운드에서 1,020만 파운드로, 자산 기준을 280만 파운드에서 510만 파운드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협동조합에 연간 약 5,0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영국 코퍼라티브 UK Co-operatives UK의 에드 마요 Ed Mayo 사무총장은 영국 전역에 약 7,000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산을 발표하면서 해먼드 장관은 과세표준가액(Rateable Value)이 10만 파운드 미만인 지역 펍(pub)들이 2017년 약 1,000파운드의 영업세 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에 3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영업세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사회적기업협의체인 소셜 엔터프라이즈 UK(Social Enterprise UK)의 피터 홀브룩(Peter Holbrook) 회장은 지자체의 기금 마련은 고무적이거나 이번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출처 : <https://www.thenews.coop>

정부예산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7467/spring_budget_2017_web.pdf

호주 BCCM, 협동조합 인식 제고를 정부에 요청하다

●●● 호주 전국 협동조합 및 공제를 대표하는 BCCM(Business Council of Cooperatives and Mutuals)이 연방 예산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BCCM의 최고경영자인 멜리나 모리슨(Melina Morrison)은 “지난 35년간, 정책과 행정이 일반기업 모델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협동조합사업 모델은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공제는 호주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 인구의 36%만이 호주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투자자들인 반면 무려 79%가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들이다.” 또한 “정부가 약

간의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협동조합과 공제 모델 고유의 안정성과 고객 중심의 본질을 통해 커뮤니티에 혜택 발생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계속 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호주 정부는 소규모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사업 등록 간소화 등을 위해 약 400만 달러를 투입하며, 2012년 협동조합연방법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 고안된 연방-주 정부협의회COAG 내 합의 내용의 효율성 측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 등을 일부 비판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진영은 정부가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을 통해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 472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소유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예산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택 확장을 위해 국가주택 금융 및 투자공사NHFIC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주택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 있어 BCCM은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의 회원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7,000개의 정비사 및 자동차 수리업체는 1974년 구매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카프리콘 그룹Capricorn Group의 회원들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2만 달러 미만의 취득자산의 즉시상각제도¹ 등은 계속 연장된다.

출처 : <http://bccm.coop>

1 즉시 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기간에 자산의 감가상각 금액 전체를 상각하는 방법으로 소액 자산에 적용된다.

생활 속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일상에서 좀 더 가까이 만날 수는 없을까요? 이번 호부터 빠르게 살고 빠르게 생산하며 소비하는 삶의 속도에서 벗어나 찬찬히 주위를 돌아보며 깊이 있게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엮어나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일상 속에서 협동과 연대의 틀을 이어 사회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를 만나보세요!

신호진
편집위원회

이번 여름휴가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성큼 다가온 여름의 기운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일깨웁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 속에서 일상에 쌓인 피로를 털어내고 넉넉한 여유를 보듬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듭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마땅한 정보를 찾기 힘들어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함께 알찬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세요!

공감만세, 여름방학 청소년 여행학교

신나는 여름방학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느 성인 못지않게 짹짹한 일정으로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에게 방학은 몸과 마음의 쉼표가 되는 때입니다. 정해진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하는 학습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방학은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방학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학기 중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거죠!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여행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공정여행은 여행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지에 경제적 혜택을 우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만남 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모델인 덴마크 교육 현장을 직접 방

문하여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뛰어놀며 관계를 쌓고 친구가 되어가는 경험 속에서 '세계 속의 나와 우리'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지만 행복은 물건을 사듯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어떻게 가꾸고 키워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위에 휩쓸리기보다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기쁨을 여행 속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감만세 홈페이지(<http://www.fairtravelkorea.com>)와 전화 문의(042-335-3600)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에코투어

시화호와 자연 친화적인 에코투어의 만남이 사뭇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호수입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는 그동안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룡알 화석지 탐방과 갯벌 체험까지 가능한 공간이랍니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시화호 생태관광을 시작으로 생태해설사, 지역주민, 생산자가 함께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코투어를 하는 관광객들은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이거나 느끼며, 지역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수익의 80%는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는데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거운 우리의 여행을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



사람과 마을을 잇는 행복한 여행을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과 함께..

운 요즘,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이 회복된 공간에서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찬찬히 느껴보는 것은 어떨
까요.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hsecotour.co.kr>)와 전화 문
의(031-355-8685)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헌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당신험

—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오향식(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원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쿰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뜯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쿰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신신일 (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 (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 권단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회]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윤주일(쿠팡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 강민수(쿠팡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회]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회]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회]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회】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회】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환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회]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회]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회】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중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물렁다이스 조합원)

【좌담회】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소센터 저 한국생협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3	2008	『일본 워크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 · 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테일 공정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D.H.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로버트 오언』
 ___G.D.H. 쿨 저 | 홍기빈 옮김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활협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 · 김성오 · 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활 협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 · 정원각 · 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 · 엄은희 · 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 · 하승우 · 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활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활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 · 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활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활협－의 동향』 ____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 손범규 · 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 하기』
_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 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 · 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 · 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 3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 · 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 · 신호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_이경수
8	2015	2015-2	『배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자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향숙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의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이경수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